

제429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30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1 |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 26 |
| 5.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7 |
|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7 |
| 3.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40 |
| 4.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 44 |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실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4시18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국정감사는 저희들 매년 해야 되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이 이미 다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저희들이 이번에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국회에서 하자, 사실 저는 그때 현장에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다 국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하루로 정했던 이 기간에 대한 감사가 왜 갑자기 이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지, 저는 변경되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오늘 이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 대법관들 그리고 또 중요한 중인들이 불출석의견서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과 룰에 따라서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이라거나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원래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봉어빵에는 봉어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저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봉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오늘 깜짝 놀랄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과연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과연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장검증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지원 위원**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현장검증을.

○**위원장 추미애** 예.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당초에 제가 들기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감은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법원은 현장 국감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위원장님 한번 그 사유를 소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안건들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회의는 저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현안 청문회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청

문화가 좀 전에 제가 위원님들 사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거 없는…… 4인 회동이라는 게, 지금 수사를 해 봐라? 의혹을 제기하면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수사를 하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나라인가요?

수사를 할 게 따로 있는 거지, 민생수사는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했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이게 좀 많이,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선의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수사직을 기피할 정도로 현장의 수사 역량, 수사 속도는 마냥 늦어져서 민생이 불안하고 우리 사회가 혼란의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있는 수사 역량을 분산시키겠다고 기존의 공수처하고 경찰 외에도 새롭게 중수청을 만들고 그리고 기소청을 구분한다, 그래 놓고는 그것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국수위라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위헌적인 위인설관을 만들고 혼란을 가져오고 하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가짜뉴스라고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 가짜뉴스를 유발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수사를 해라,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수사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가 가짜뉴스인지…… 그러면 오늘 제대로 된 증인들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 출처인 바로 그 방송, 언론을 불러서 정확한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위 청문회라는 것을 오늘 개최해 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안 나온다고 지금 겁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자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청문회에 나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농락하고 발아래에 두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절 연휴가 다가오지만 대한민국 현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 무시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일을 좀 자중해 주시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번에 화재가 났지요. 여러분들, 그것 보통 예삿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손대려다가, 배터리 어떻게 좀, 다시 이설하려다가 화재가 났어요. 그런 작은 사고 하나로도 국가적인 마비 사태가 오는데 바로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지금 손을 대고 있고 겁박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번의 이런 국가전자정보 마비 사태를 넘어서 국가 일선 민생수사 현장, 민생 현장의 대마비 사태로 올 수 있습니다. 제발 자중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사법개혁, 검찰개혁 함부로 이렇게 거론하지 마시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개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면 좀 옮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시비 삼아 가지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

다시 올려 주세요, 화면.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일단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늘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분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5월 2일 날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 저한테 저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인가요, 조선일보에서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스스로도,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14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또 저렇게 어물쩍한 저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나와서 ‘자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 그러니까 기록을 전부 봤다고 했다가 제가 로그기록을 요구했더니……

○**신동욱 위원** 이게 안건 토론이 맞습니까?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이 발언 중일 때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안건 토론이 맞냐고요?

○**위원장 추미애** 1차 경고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랬더니 ‘다 기록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못 봤대요.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로그기록을 봐야겠다 또 전자문서화된 기록을 봤다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전자문서를 정말 만들었는지, 대법관들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저 전자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봐야겠다는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법원장부터 여기 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한다면 현장 국감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기록을 볼 정도로,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면 대법관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했더니 각 대법관별로 75평이 필요하답니다. 1조 몇천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들이 정말 75평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75평은 왜 필요한 건지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을 늘리려면?

그래서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감 일정에, 오늘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법관들이 나와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지난 5월 달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이 됐다면 필요 없겠지만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참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엊그저께 통과시킨 법들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국회증감법, 국회법, 전부 다 하나같이 위헌·위법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법사위가 있습니다. 또 법사위는 그 진행에 있어서도 안타깝지만 4명 위원 앉아 있는데 3명의 위원들에게 퇴장을 명하고 사실 직권을 남용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청문회요구서도 어떻게 제출됐습니까?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협의라는 절차가 있었나요? 우리가 검찰 해체 청문회 하는데 불쑥 청문회요청서 제출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헌법 103조 위반이고 합의는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조직법 65조 위반이고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다.

민주당이 한마디로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그리고 내란 재판 무조건 유죄 내라 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저희한테 내란 내란 하시지 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 청문회에 당연히 오지 않아야 될, 출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거 뭐 정치보복입니까? 국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제일 우위에 있다,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신호탄이 돼서 ‘대통령도 바꿔치는데 대법원장은 못 바꾸냐’, ‘판사가 무오류의 신이냐’…… 저희는 보니까요 여기 국회에 총무비서관 한번도 출석 안 한 적 없었는데 그 출석 안 하는 김현지 현 부속실장, 그분이 무법의 신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오류의 신인가’하면서 대법원을 도륙하고 또 지금 파견검사들…… 아니 뭐,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검사들이 본인들 의견표명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이걸 또 법사위에서 개입하겠다?

저는 이렇게 판검사 도록하고 대한민국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선출된 권력, 입법부에 대한 이 권한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을 이렇게 도록하고 나서 4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건 뭐냐, 4심제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주머니 안에 있나 보지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심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 하겠다는 것하고 모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실추시키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법부를 뒤집겠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뜻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서영교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오셨는데 이게 다 가짜뉴스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AI 이런 운운하시지 말고 가짜뉴스에 대한 것…… 특히 서영교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당 보좌진 이름 거명해서 보좌진이 완전히 엄청 고생했습니다. 소위 개딸들의 공격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 사과해 주시고. 전현희 위원은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런 가짜뉴스를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사과 안 하면 부득이 고발한다는, 형사 조치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법사위도 정말 진짜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잘 다투어 보고, 해서는 될 일 안 되는 일 구별하고 그리고 법사위도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혼자의 법사위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 발언권을 많이 뺏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법사위원장께서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영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으로 먼저 할게요.

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이러면 안 좋은데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22일 2부에 배당된 것을 그날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24일 표결을 끝내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대선개입 의혹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 선거법 중립의 의무 의혹, 이것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거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한덕수와 이야기를 했는지 정상명과 이야기를 했는지 김충식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계엄 당일 날 전화를 윤석열에게로부터 받은 나경원, 윤석열이 계엄 당일 날 나경원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이 모든 것부터 다 밝혀져야 합니다.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앰바고를 겁니다. 한덕수는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앰바고를 걸고 출마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나고 5월 1일 4시에 한덕수가 사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를 대통령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발악들을 하지요. 그 과정에서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무슨 전화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만나고 무슨 모임을 했는지 그리고 조희대가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는 4시에 사직했는지 그리고 전날 어떻게 엠바고를 걸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쌍권 그리고 윤석열이 전화한 나경원 등 모두 다 의혹 아닙니까? 저는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꿀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지요, 꿀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던 날 이야기한 겁니다,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한 건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그 한 건이 이게 바로 5월 1일 파기환송한 그 사건이에요. 사법부 개혁의 문은 조희대가 열었다, 사법부 개혁의 문은 지귀연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과 함께 있었던 그 검사들이 열었다.

조희대는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7명, 6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 6명이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조희대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잘 보세요.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는 5월 9일 날 낸 것과 9월 25일 날 낸 겁니다. 빨간 줄 친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부르는데 이렇게 오만 방자한 조희대. 보십시오. 최근, 지난 5월, 이것만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조희대가 복불한 그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도 정당해야 불출석사유서가 인정되는 것인데 이건 불출석사유서도 아니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가요?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마저 한 번 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희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조희대의 일정을 요구했어요. 일정을 요구했는데 조희대,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표결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 넣어 갖고 오면서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말 좀 곱게 하게 하세요. 어디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목소리 크다고 가짜가 사실이 됩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이름을 그렇게 불러 대면서 동료 위원한테……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아니, ‘서영교’ 이름을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경원 위원** 나는 그래도 ‘위원’이라고 말했어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서영교’ 이름을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회 까닭 변하지?

○나경원 위원 ‘나경원’이 뭐야, ‘나경원’이. 당신 친구야?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시간을 다시 넣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내 말에 놀랐나? 송석준, 내 말에 놀랐나?

○송석준 위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야, 서영교! 서영교!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 곽규택! 조용히 해!

○곽규택 위원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 마!

○서영교 위원 곽규택! 조용히 해!

○최혁진 위원 야!

○곽규택 위원 어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

○최혁진 위원 조용히 해! 야!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야, 최혁진! 조용히 해!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최혁진 위원 야, 입 다물어!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 곽규택, 조용히 해!

○곽규택 위원 서영교, 조용히 해!

○위원장 추미애 위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의사진행발언을 얻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1회 경고했습니다. 2회 경고를 넘어서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퇴장 조치할 것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 소란)

자, 지금부터 의사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위원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습니까?

(「윤석열」 하는 위원 있음)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조희대」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조희대입니다. 바로 대법원 자신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제 막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적반하장, 5개월도 채 안 되어 어이없게도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주범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팽개친 장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핑계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끔 그리고 국회의 탄핵 결의,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 내란 수괴 석방, 그렇게 국민들의 피 말리는 날이 지나고 4월 4일에야 비로소 내란 수괴가 파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내란 세력, 내란 잔당을 구해 보겠다고 등장한 것이 지금 이토록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 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아닙니까? 지난 5월 1일의 그 대법관 나으리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높은 법대 위에서 국민들을 굽어보며 앉아 계셨지요. 손을 텔털 떨며 판결문을 읽어 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뜻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와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 주는 몇 명의 사람들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나으리들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결정했으니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가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파기환송된 사건이 그다음 날 바로 고등법원에 접수, 배당, 공판기일 결정까지 되고 통지까지 발송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일입니까? 사상 처음이라면 왜 그랬습니까? 그때 대법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대법원 밖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서울고등법원에는 무슨 지시를 내렸습니까? 왜 그렇게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뚫뚫 물쳐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내란 세력과 함께 사법부 독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기득권의 영구화를 꿈꾸는 세력과 사법부 기득권이 힘을 합쳐 그 권력의 영구화를 꿈꾼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외쳐 대는 사람들이 할 짓이었습니까? 국민이 부여해 준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을 겨눈 내란 행위에 부역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어볼 사람이 정작 없네요.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어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은 대법원장이었고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불과 5개월도 채 안 되어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며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내란 종식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 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해명할 기회를 준다는데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자신이 뜻렷하다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한 30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30초 더 넣어 드리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들어 보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좀 들어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허물어진 성채 뒤에 숨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 오래 숨어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조회대 대법원장 나오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로그기록도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송석준 위원 목소리 크다고 가짜가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호도하지 마세요들.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면 되나? 송석준 위원 얘기가 자기 얘기야.

○나경원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소설 좀 그만 쓰세요, 소설 좀. 이건 도대체…… 기록, 일정 이런 것 보면 소설이에요, 소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먼저 신상발언……

○송석준 위원 선전·선동하지 맙시다.

○나경원 위원 소설 좀 그만들 쓰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위원님.

○신동욱 위원 신상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정감사 실시계획(안)이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통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A4용지 한 장짜리 일정표를 저희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한 실시계획(안)은 저희 당이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줬다고……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님이 그걸 받았다라고 주장은 하면서 직접 행정실……

○서영교 위원 일정표.

○신동욱 위원 들어 보세요.

행정실 직원 PC 앞에 가서 19일 발신한 이메일 목록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이 행정실 직원 PC 화면을 본인 방 보좌진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했고 이 출력물을 상임위원장에게 내보이면서 보낸 것이 맞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수신자 목록이 각 방마다 꽉 다 있습니다. 각 방의 이 문서를 수신한 비서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유독 저희 방 비서관의 이름에 형광펜을 칠해 가지고 그 비서관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받은 게 맞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면 이 방을 취재 중이던 매체 카메라에 찍혀서 그 비서관이 대단히 잘못한 일을 한 것처럼, 그 문서 받은 게 대단히 잘못한 일입니까? 그 실

명을 거론해서 비난을 하는 바람에…… 그 화면을 보니까 ‘누구 방 비서관이야?’ 자막으로 ‘신동욱’ 이렇게까지 써 놨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 클립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앞뒤 맥락도 전혀 없이 저희 방 비서관의 실명 이름을 그런 식으로 서영교 위원님이 소리를 치면서…… 그래서 이 비서관이—소위 좌표 찍기가 된 거지요—상당한 스트레스를 며칠 동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더니 행정실장이 본인은 없는 사이에 행정실 직원이 서영교 위원님의 압박 때문에 그 화면을 띄웠고 그 화면을 서영교 위원님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행정실장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님처럼 소설 쓰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누가 소설을 쓴다 그래요?

○**신동욱 위원** 아까 소설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 권 나오겠더라고요, 원 투 쓰리.

행정실장도 이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서영교 위원님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실지 모르지만 그 행정실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때문에 저희 비서관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고생하는 비서관들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 때도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것 제가 할 일 아니지요. 개인이 서영교 위원님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로 고통을 받았으니까 법적인 처벌은 저희가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서영교 위원님, 적어도 양식이 있으시면—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행정실에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송석준 위원** 사과하세요.

○**서영교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행정실장, 주무관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영교 위원** 누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고요?

○**신동욱 위원** 행정실장, 주무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렇게 되치기를 하려고 하지요? 그날 그 자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장본인 신동욱 위원 아니에요? 국정감사계획(안)은 국회의원 자리에 다 올려져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날 국정감사계획(안)은 책상 위에, 국회의원들 자리 위에 전부 다 올려져 있었어요. 모두 다에게 올려져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날 처음 본 계획(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생판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보니 그 안의 모든 것은…… 국정감사계획(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은 여야 누구, 가는 사람은 누구, 오는 기관은 대법원부터 어디 어디, 있는 것은 다 그거예요. 그것에다가 거기에 더 있는 것은 일정이에요, 일정. 일정인데 그 일정 뻔히 있는 것을 안 받았다고, 여기 계획(안)에 있고 계획(안)은 책상 위에 다 있는데 안 받았다면 위원장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정은 받았느냐?’, 일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줬느냐?’, 다 나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았다면서요, 계속?

○**신동욱 위원** 아니, 보좌진 이름을 왜 공개를 했냐고요?

○**서영교 위원** 안 받았다면서요?

○**신동욱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딴소리하지 마시고.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날 계획(안)은 다 올라와 있고 그러면 안 받은 게 아니라 일정은 다 돌려 줬다고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좌진이 옆에 가서 행정실에서 이 일정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하다가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뭐 하냐고 지적하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본인이 왜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망신을 주냐고요?

○**서영교 위원** 들어 보세요.

중요한 건 지적하니까, ‘어느 의원실이에요?’라고 물으니 신동욱 의원실이라고 그 보좌진이 말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신동욱 의원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날 그 보좌진이 가서 옆에서 행정실에다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 법사위원회장님이 ‘누군데 옆에 와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 ‘어느 실이에요?’라고 물으니 그 사람들이 ‘신동욱 의원실이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좌진 이름을 왜 큰소리로 외치냐고요, 신동욱 의원실이든 누구 의원실이든?

○**서영교 위원** 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신동욱 의원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동욱 위원이 계속 안 받았다고 하니, 그 얘기를 하다가 신동욱 의원실이라고는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동욱 의원실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일정표는 다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갔잖아요. 일정표는 다 갔고……

○**신동욱 위원** 서영교 위원이 그 보좌진 이름을 큰소리로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됐고요. 다 알았는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서영교 위원** 가만히 계세요! 얘기 다 끝났으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신동욱 의원실이라고 얘기는 그 사람이 했고 그래서 신동욱 의원실인 줄 알지 내가 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료에는 일정표가 다 나와 있었고 받은 사람이 다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은 누구 한 명만 받는 게 아니라 웬만한 보좌진이 다 온다는 겁니다. 신동욱 의원실의 한 명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방도 여러 명에게 오고 신동욱 의원실에도 여러 명에게 가고 곽규택 저 방에도 여러 명에게 가고,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읽은 사람이 표시돼 있는 거야, 읽은 사람이. 읽은 사람이 표시돼 있고, 그러면 이 내용은……

개인정보? 보세요. 이게 한꺼번에 오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누구나 다 나와요. 그리고 안 받았다고 해 놓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가 끝난 것 아닙니까? 법사위가 끝났어요. 그런데 신동욱 의원실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광규택 의원실도 받고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동욱 의원실도 마찬가지고.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방 보좌진 이름만 그렇게 큰소리로 외치……

○**서영교 위원** 그 보좌진이 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신동욱 위원** 아니, 여기서 왜 외치냐고요,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신동욱 의원실 보좌진이 가서 물었으니 ‘혹시 이 사람이냐? 그 여자분이냐? 그 여자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안 받았다고 물었으니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동욱 위원** ‘그 여자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서영교 위원** ‘여자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동욱 위원** ‘그 여자분’이라고 했냐고요?

○**서영교 위원** 그래요.

○**신동욱 위원** 화면 보여 드릴게요, 나중에.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내가 화면 확인했어요. 기사에 그 ‘분’ 자만 빼고 기사를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사에 ‘분’ 자를 빼고 썼더라고, 내가 ‘여자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동욱 위원** 창피합니다. 그만둡시다.

○**서영교 위원** 되셨어요?

○**신동욱 위원** 경찰에 가서 진술하시고, 그만둡시다.

○**서영교 위원** 시작은 신동욱 위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은 신동욱 위원이 시작해 놓고 그래 놓고 어디다가 되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날 신동욱 위원이 안 받았다고 계속 하지 않았어요?

○**신동욱 위원** 기사를 보면 서 위원은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며 ‘보좌진들에게 그려려고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서울의소리에 이렇게……

○**서영교 위원** 그래요. 내가 그려려고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보좌진……

○**서영교 위원** 내가 실명 또 거론해요, 지금?

○**신동욱 위원** 아니, 본인이……

○**서영교 위원** 내가 실명 또 거론하길 바라요?

○**신동욱 위원** 아니, 본인이 실토했는데 왜 ‘여자분’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본인이 실명을 거론했다고 실토히 놓고서는?

○**서영교 위원** 그 앞에! 신동욱 위원, 그 앞의 기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더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창피해요. 그만해요, 그냥.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다음에 토론……

○신동욱 위원 서 위원님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서영교 위원 보좌진협의회가 글을 냈던데 내가 ‘여자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분’ 자를 빼고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아주 잘됐어요. 내가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동욱 위원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기한 거예요.

○신동욱 위원 시작하고 싶어서 했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받아 놓고 안 받은 것처럼 하냐 이거예요!

.....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오늘 언론에도 그 문제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시작하기에 앞서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이 엄중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위층, 특권층이 되면 법적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간사님, 저는 반드시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예.

○최혁진 위원 저는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거 제출도 하지 않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대법관 12명 정도 증원한다고 하니까 1조 4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4인 가족이 20평대 초반 임대아파트 하나 얻으면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하면 삼사백 명이 일하는 공공기관 하나 짓는 데 300억이

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법관 12명 중원하는 데 1조 4000억이라는 그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제왕적인 사법부, 자신들이 황제인 줄 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는 영상으로도 찍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대법원을 저희가 현장검증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가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꼭 요청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입니까?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의 사법부 이 체계로 인해서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법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으니까 지귀연의 만행조차 감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언론에서 ‘징계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휴대폰을 수시로 바꿔 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혼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잘난 감사위원들이 뭘 하고 앉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앉아 있길래 판사 하나 감사도 똑바로 못 하고 이런 걸 결과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결국은 수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은 가슴에 명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당시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거품 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거품 물고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본인들이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막으면 자기들이 막아야지 누가 계엄을 막습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상태를 용납해 주니까 국민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복장 터지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오늘도 와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내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영교 위원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요? 가짜뉴스는 본인들이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AI 허위 조작이라고요? 제보자가 있고 음성변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뭘 자꾸 1분만 더 달라고 그래요.

○최혁진 위원 아이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넌 좀 조용히 해!

○곽규택 위원 혁진아, 조용히 해!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한테 ‘너’라는 게 뭐니까, 이게 지금? 당장

경고 주시고, 아까 반복해서 그러는데 퇴장 명령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도 잘한 거 없습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박지원 위원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은 거야.

○송석준 위원 퇴장 명령 주세요!

○최혁진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의가 없어.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한테 막말을 해, 막말을.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최혁진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게 예의 없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추석 앞두고 자꾸 막말을 해.

○최혁진 위원 예의가 없으니까 ‘야!’라 그랬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 드리지요.

또 제보가 왔습니다. 또 다른 제보입니다.

김충식의 최측근이 육성 녹음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김충식은 뭐라 그랬나? ‘조희대를 잘 안다’, 조희대를 잘 안답니다. ‘밥 먹었다’, ‘무슨 얘기를 했나?’, ‘그냥 밥만 먹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윤석열이 옵티머스 사건 관련 변호사를 만났을 때 만난 게 밝혀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강아지 얘기만 했다’, 고위직에 앉아 가지고 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기껏 만나서 강아지 얘기나 할 거면 뭐 하러 밥 먹고 살고 있습니까? 다 옷 벗고 나가야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도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는데 위원장님,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법사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전현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좀 번갈아 가면서 토론 기회를 주셔야지.

○박지원 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김충식’, ‘김충식’ 하지 마세요. ‘남산의 부장’을 쓴 김충식 대학 부총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 이름이 유명하니까 자기라고 한다 이거야.

○곽규택 위원 지금 누구 발언시간이에요? 마이크를 왜 켜?

○박지원 위원 그래서 김건희 의붓아버지라고 하세요.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 의붓아버지.

○곽규택 위원 진짜 무질서하네.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모든 권력에 우선합니다.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대선개입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삼권분립 혼수의 당사자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법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이 자리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를 무시한 그 행위보다 더 엄중한 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당사자인, 가장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국민들 앞에 그 소명을 하라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화두가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 나가고 스스로 바로 세워야 할 헌법적인 책무임을 명심하시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나경원 위원이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대상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제가 날짜를 좀 잘못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착오였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론을 죽 찾아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정권에 사법부 바치려 하면 탄핵 대상이다’,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위원이 당시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대상이라고 발언한 기사들이 다수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위원은 자신이 탄핵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명백한 허위고 그거야말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경원 위원께서 지금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셨는데요. 사과를 요구하시려면 자신이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을 한 사안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했고 또 저의 토론 발언마저 중간에 방해를 해서 제 발언을 멈추고 사실상 그때 정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사진행발언과 동료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석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명백히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고 내란 공범이다, 계엄을 막지 못한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전체 다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넣어 드리세요.

○전현희 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안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동원되었던 40여 명의 국힘 의원들도 모두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은 이러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그리고 다중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사과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도대체 법사위가 지금 무슨 협박……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님.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한두 명은 양해합니다만 어떻게 모든 발언에 대해서 1분씩 더 주는 이런 식의 진행을 합니까? 한두 명은 저희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진행입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박은정 위원 맞는 말 해서 더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질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박은정 위원 본인들도 더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님 발언 중입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에 소환까지 하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혼드는 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사법부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그것도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 나와서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발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 안 오지만 소통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대법관이랑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건너서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 그래서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냥 무죄로 확정될 걸로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바뀌었더라,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민주당 인사는 누굽니까? 누가 대법원과 소통을 해서 이것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대법원의 내밀한 재판 진행 상황을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청문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빨리 잡은 것이 문제라면 선고기일을 빨리 잡았을 때 그때 가서……

○**박은정 위원** 조희대 알아요, 주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 아이, 발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 안 하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선고기일을 빨리 잡은 것이 문제라면 대법원 선고기일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난리를 쳤어야 돼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나 싶어 가지고 다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왜 선고기일이 빠르냐는 등부터 시작해서 사법부 독립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계속 강압해 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결론 내릴 정도라고 하면 대법관 10명만 결론에 동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수많은 재판연구관들이 다 사전에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접수되고 나서 한 달이 넘을 정도 되면 수십 명의 재판연구관이 달라붙어서 다 사전 검토하고 쟁점 정리하고 법리 면밀하게 검토해서 무려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동일한 결론을 냈던 겁니다. 오히려 항소심의 엉터리 무죄를 뭐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1심 재판부에 있던 판사님들도 수십 년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1심에서 수십 년간 재판했던 그 재판관들이, 수십 년간 재판한 사람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정도면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굉장히 명확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현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부르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특히…… 아니, 김충식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데요. 실제 제보자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특히 열린공감TV 사람들 불러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자신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매번 이 안에서만 떠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서영교 위원** 주진우 위원도 법적 조치했다면서요.

○**주진우 위원** 이것은 경고 안 하십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아니, 편파 진행도 정도가 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계속 진행하세요.

○**주진우 위원** 지금 몇 번 끼어드는데 한 번도 경고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계속 발언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발언하세요.

○**주진우 위원** 아니, 지금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신경 쓰시지 말고 발언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도 경고하지 마십시오, 저도 끼어들 테니까.

○박은정 위원 저한테도 끼어드셨어요.

○주진우 위원 회의를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요.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특검 수사합시다. 통화내역 까 봅시다.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편파 진행을 하는데 무슨 토론이에요? 제대로 진행하세요!

○박은정 위원 뭐가 편파예요?

○서영교 위원 특검으로 누구랑 했는지 다 까 봅시다.

○곽규택 위원 1분 더 주세요.

○송석준 위원 3분 더 주세요. 간섭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까 봅시다.

○주진우 위원 저는 안 줍니까, 그러면?

○위원장 추미애 본인이 1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 시키지 마시고요.

○주진우 위원 저 1분 더 주세요, 그러면.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주진우 위원 사법부를 혼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겁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에 승복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대법원장 사퇴 얘기하는 경우 정치적인 언어로써 한두 마디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의결해서 중인으로 부르고 안 나왔다라고 지금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해요? 아니, 선진 법치 국가 내지 세계적인 나라들 중에서 알 만한 나라들,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나라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한 나라만 한번 대 보십시오, 이렇게 대법원장을 불러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하겠다고 얘기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원장에 대해서 호통치는 이런 나라가 또 있어요? 한 나라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한번 직접 말씀을 해 보세요.

○전현희 위원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했어요. 이미 대법원에 난입까지 했어요, 국민의힘이.

○박은정 위원 사퇴 요구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전현희 위원 대법원까지 쳐들어간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송석준 위원 자꾸 간섭을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곽규택 위원 안건에 대해서 발언……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성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 발언 좀 합시다.

○이성윤 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민주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나경원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식 발언이라면 십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나경원 위원님, 재판받고 구속될 준비 하십시오. 명백히 명예훼손입니다.

○**나경원 위원** 연설문 잘 듣고 해석하세요.

○**이성윤 위원** 자꾸자꾸 대법원을 혼든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원 노조에서 9월 16일 날 성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도 법원을 혼든다고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나온 성명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또한 형사 소송법을 어겨 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 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린 것이다. 이제 책임 있는 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지금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 가고 있다. 법원장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스스로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이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고 법원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회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사법부 혼들기입니까? 내부에서 혼드는 겁니까?

○**주진우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송석준 위원** 명백한 사법부 혼들기지요.

○**이성윤 위원** 내부에서 혼든 겁니까?

○**주진우 위원** 안 부끄럽습니까?

○**이성윤 위원** 오늘 법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혐의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조사가 부족할지 모르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검찰로 말하자면 참고인증지 한 셈입니다. 다섯 달 동안 도대체 뭐 해놓고 이제서야 이런 결론을 냈는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귀연 부장판사가 때때로, 수시로 자기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왜 바꿨겠습니까? 휴대폰 바꾸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뭔가 꺼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할 때나 또 감찰받을 때를 앞두고 이렇게 휴대폰을 바꾼 겁니다. 휴대폰 바꾼 것, 본인은 바꿨지만 상대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하면 다 나옵니다. 지귀연 부장은 뜻뜻하다면 자기의 휴대폰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조회대 대법원장과 함께 자기의 통화내역을 명백히 공개하십시오.

지난 5월 3일 날 전 국민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조회대 대법원에서 6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 읽었다, 국민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AI도 아닌데 6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이틀에 다 읽었다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가, 전자 문서 접속 기록, 로그기록을 공개하라 이런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요원의 들불처럼 조회대의 로그기록을 공개하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 로그기록을 확인하려 가자는 겁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했다, 로그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다 봤다’ 이렇게 변명했으면 우리 법사위원들이 갔을 때 보여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 100만 명 이상이 넘는 국민들이 과연 로그기록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수요일 날 반드시 대법원을 방문해서 로그기록을 확인하고 접속 시간, 열람 대상 그리고 열람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15일 수요일 날 갑자기 대법원에 가 가지고 국정감사 하는 일정이 추가가 됐어요. 지난번 법사위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의결을 다 했었고 그때는 국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자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오늘 긴급현안 청문회를 하는데 증인 나온 것 좀 보세요. 증인이 2명이에요, 2명. 증인 1명, 참고인 1명. 증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1명, 참고인은 고려대학교 교수 한 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갑작스러운 청문회를 왜 잡았습니까? 난데없이 대법원장 4인 회동설 해 가지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이냐, 그래서 그 근거를 못 대니까 갑자기 4인 회동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청문회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아무런 근거 없이 4인 회동설 문제를 제기했던 서영교 위원님이 그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을 가지고 법사위가 총동원돼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 해서 갑자기 청문회를 열더니 그런 청문회가 부당하다, 지금 대법관들이 다 불출석의견서를 내니까 또 난데없이 국정감사를 하루 더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고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 주기 위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한 번 의결을 해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 의결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 것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하루를 잡겠다, 현장 가서 하겠다…… 이게 말씀 들어 보니까 현장 가 가지고 대법관들,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감사계획서가 마음대로 변경된다는 것이 어제께의 국회 본회의를 보는 것 같아요. 국회증감법을 개정하는데 토론을 하는 중에 수정안이 나오더니 토론이 끝나고 재수정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소멸된 특위나 이런 경우에 그 고발할 수 있는, 위증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갑자기 법사위원장한테 주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고 생

각했는지 다시 국회의장한테 주겠다, 이게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올린 안건을 무슨 호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안건 하나 정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오늘 하루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청문회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국정감사를 하루 더 해 가지고 가서 면피성 국감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님이 정말 법사위를 잘못 운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하시고 원래 계획대로 다시, 그 전의 국정감사 일정 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광규택 위원님이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정안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법사위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타위법인 관계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가 저희 법사위에 이관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 마치 법사위원장 뜻대로 임의로 수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법사위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문구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규택 위원께서 ‘위원장 스스로 생각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다시 재수정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아마 오인·오해에서 비롯된 발언 같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회의록 다시 보세요.

○위원장 추미애 회의록 다시 스스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해 놨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광규택 위원 본회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회의를.

○위원장 추미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함부로 모욕하시면 거기에 따른 발언 제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렇게 문해력이 없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거 없는 내용을 자꾸 주장하는 광규택 경고하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그만 좀 하세요. 품격 떨어져서 못 듣겠어요. 조용 좀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품격은 신동욱 위원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협조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8일 이쯤에 임명된 것 같고 그때

주진우 위원님은 법률비서관으로 계셔서 아마 임명에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호하는 발언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고 왜 현장 국정감사를 가는지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볼까요? 한덕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발언의 흐름이 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4월 4일 날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사퇴할 일은 없을 것’,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4월 8일 날 한덕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훌립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훌렸던 얘기지요. 4월 6일 이후에 8일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 4월 7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대선개입을 했느냐입니다. 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느냐입니다.

보실까요? 4월 27일·28일 이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 확정됐고 4월 28일 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 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심리 종결하고 단 5일 만에 선고 지정해 버리지요. 그리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 엠바고를 겁니다. 다음 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엠바고를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9일 만에 과기환송돼 버립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민주당 당시 후보였지요—후보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한덕수는 사의 표명하고 그다음 날 한덕수 출마 선언합니다.

5월 2일 날은 과기환송심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 5월 15일.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5월 10~11일 대선후보의 중앙선관위 등록일자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한 이후에 5월 15일 날 과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면 그 과기환송심 재판을 신속하게 선고를 해 버린다고 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사이에 5월 10일 날 한덕수는 국민의힘에 새벽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했지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한덕수가 조희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항소심 기일을 잡아 왔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느냐, 그래서 국민들은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으면 현장 안 갔을 수도 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도 답변이 불확실

하고 이상하면 현장 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할 때 빨리 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귀연,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날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 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귀연의 술 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휴대폰 교체한 것 한번 볼까요?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예,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김용민 위원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지귀연 재판장, 판사의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지요. 이렇게 가격 싼 것,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희가 현장 국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위원님들마다 충분히 토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위원 신상발언 때문에 토론을 못 했습니다. 토론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 안 하신 위원님……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등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네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5시43분)

○위원장 추미애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추가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손 내려 주세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5시46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5항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검증 일자는 10월 1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5시48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79개 피감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등 기관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의결로써 국정감사계획이 변경되어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추가됨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출석을 요구하되 감

사 모두에 인사말씀을 하고 이석을 하였다가 감사 마무리에 다시 입장해 종합답변을 했던 기준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한번 팩트 확인해 보십시오. 김용민 위원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다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러분, 우리 다 법률가들입니다. 이것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 5월 1일 날 파기환송했어요.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공판예정기일로 잡았습니다. 2심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판결 선고를 5월 16일에 한다고 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고를 하고 상고되면 그다음에 소송기록이 접수돼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아마 이재명 피고인은 안 받았을 것이고 즉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7일 플러스 20일, 27일이 지나야지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 2일이 훌쩍 넘습니다. 대통령선거일 6월 3일을 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시 대법원 상고심에 가 가지고 확정돼야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소설을 써도 지나치고 이런 허구 주장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을 혼든다? 이것 다 이유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 재개되면 당연히 당선무효되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질서 혼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무죄 법을 만드십시오. 그게 낫겠어요. 대한민국 헌정질서 이렇게 혼들어도 됩니까? 아니, 오늘 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한 것도……

5월 1일 대법원에서 왜 이 판결 했습니까? 1심은 유죄인데 2심은 완전히 ‘인식의 표명이다’, ‘의견의 표명이다’하면 몽땅 무죄가 되는 거짓말, 면죄부를 준…… 아니, 판결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사법 신뢰가 혼들리게 됐다, 1심하고 2심이 정반대니까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두 가지 판결이 너무나 극과 극이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겠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박탈하려고 그랬다? 소설을 써도 적당히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상 불가능한 것,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유로 대법원 현장검증한다면서 녹취록에 나온 이 허위사실…… 서영교 위원이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5월 2일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5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그 전후에, 임명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잘 봐주겠다고……’, 이때는 이것을 주장하다가 5월 10일에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 하니까 5월 14일에는 ‘4인 회동’으로 바꿉니다. 이 4인 회동의 시기는 12월 8일, 임명 전후가 아니라 이것은 시기가 또 그 이후예요.

이렇게 시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기하시는데 이거를 법원에서 현장검증하려고 그러고, 이것 사실관계 밝히려면 열린공감TV 정천수는 왜 증인에서 뺍니까? 오늘 이 증인 명단 보니까 정천수는 뺏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가짜 녹취록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고 대법원만 혼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대법원 혼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당장 취소하시고요.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 만드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나경원 위원께서 진짜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엄 때 윤석열 내란 수괴하고 통화까지 했던 분이 그것을 몰랐을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서영교 위원 전화는 왜 했대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방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내란은 인정하는 것이네요, 방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인가요, 민주당 의원을 방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나경원 위원 연설문 잘 읽어 봐요. 거기에 ‘내란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될 문제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김기표 위원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같은 당 의원들도 그것이 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 소설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당시 어디 방송에 나가서 정상적인 법조인의 상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건전이 다 틀린 결과가 지난 12월 4일 이후에 최근까지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지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연속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기 전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가능했지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속된 말로 날릴 생각이 아니었으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왜 이를 만에 결정해서 대법관들한테 결정받고 판결문 일주일 만에 써서 판결하고 그다음 날 바로 고등법원에 보내서 배당까지 하고 집행판 송달 촉탁까지 했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렇게 송두리째 사법부 독립을 혼들 그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 있는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법조인 출신들은 ‘상고이유서 있고 이런데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대법원에서는 지시가 내려갔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마는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이 바로 그다음 날 재판 일정 통지하고, 집행관 보고 ‘가서 일정 통지해라’ 할 때는 일단 고등법원에서 빨리빨리 선고하고 바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과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나경원 위원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김기표 위원 형사소송법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재판소원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명백하게 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 아무 견제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법관 충원을 얘기하고 재판소원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 마치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자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 뭔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재판소원 필요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나경원 위원 2심 판결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김기표 위원 나경원 위원님,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이를 만에 결정 내립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꼼꼼히 따져 보고 더더욱 충분히 토론하고 해야지요. 그러면 왜 그다음 날 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나경원 위원 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다 검토했다니까요.

○김기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간사 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이왕 말 나왔으니까 간사 임명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 간사 임명 절대 안 됩니다.

○송석준 위원 이왕 말 나왔으니 우리 간사 먼저 임명하고 시작합시다.

○위원장 추미애 토론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 아니, 다른 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사 자격이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상대방에게 말을 유도했잖아요.

○김기표 위원 무슨 발언을 유도했습니까?

○신동욱 위원 ‘그래서 간사 되겠습니까?’ 한 게 유도한 것이지 뭐예요, 그러면.

○송석준 위원 간사 얘기했잖아요, 간사. 간사 안건 빨리 올려 주세요.

○서영교 위원 방해 좀 그만해요, 방해 좀.

○김기표 위원 방해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와서 법을 제대로 지켜서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무도한, 이를 만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하고 날짜 바로바로 잡고 했던 것, 대법원 내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곧 규명될 것입니다, 수사하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감 증인·참고인 관련해 가지고 안건 하는 것 맞지요? 안건이 원래 올라와 있다가 또 다른 안건이 지금 또 들어온 게 있는데 뭘 가지고 증인·참고인을 채택한다는 것인지 조금 분명히 해 주시고요.

원래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증인·참고인으로 예정했던 명단을 보면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에 총 109명까지 연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나온 것에 다시 23번까지 또 명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야 간에 사전 협의를 했던 이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 109명의 명단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현직 판사 이런 일반 증인·참고인은 다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안건을 정하는데 갑자기 끼워 넣기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판사 등이 포함돼 있는 23명의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이 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감 증인을 오늘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기로 해 놓고 이 안건 표결 직전에 다시 이렇게 23명의, 이거는 당연히 여야 간에 협의가 안 됐던 명단이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원래 109명 명단 정할 때는 분명히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은 일반 증인·참고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논의를 해 가지고 명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협의를 무시하고 아마 위원장님이 또 일방적으로 넣으신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일방적인 명단을 갖다가 또 한다는 것은 법사위를 너무 위원장 자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

원래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증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참고인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는 다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또 보복성으로 이렇게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들까지 일반 증인·참고인에 끼워 넣어 가지고 표결하려는 것, 이것은 정말 사법부에 대한 억지적인 사법부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명단이 갑자기 포함됐는지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판사들을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국정감사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빼고 원래 여야 간에 사전 논의한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기초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나경원 위원께서 갑자기 저를 법률가로 만들어 줘서, 저는 나경원 위원처럼 고시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해 놓고 발언할 위원이 없도록 사라져 버리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이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것도 나쁜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열댓 명이 문 앞에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고 그립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인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제가 그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술자리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서는 없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게 바로 정답 아니에요? 저는 대법원이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AI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어제오늘 전부 경찰에 고발했다고 그래요. 조사받아 보면 될 것 아니에요?

만약 저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면 의혹은 제기됐으면 자기들의 결론처럼,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성역이라고요? 어디 성역이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 외에는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대통령은 성역입니까? 대통령은 성역이에요?

○**박지원 위원** 들어 봐요.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 봐!

○**송석준 위원** 잔소리가 아니라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

○**박지원 위원** 끼어들지 마!

○**위원장 추미애** 빨언 중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두 번째 경고입니다.

○**나경원 위원**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박지원 위원**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에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만이 현직 재임 중에는 불소추권이 있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송석준 위원은 몰라요, 저처럼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충식’, ‘김충식’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현직 대학 부총장, ‘남산의 부장’을 쓴 김충식 저자가 가는 곳마다 자기하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서 아주 못 살겠대요. 제발 부탁하는데 ‘김충식’ 이름 부르지 말고 ‘김건희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알았어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느라고 애쓰시다가 배지 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박지원 위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

○**박지원 위원**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 됐어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박지원 위원님.

DJ 대통령 취재를 시작으로 기자 생활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서영교 위원** 윤석열 찬양하다가 당선된 신동욱.

○**박지원 위원** 그때는 신동욱 위원이 괜찮은 기자였는데 그 후로 타락했어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지원 위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고 또 추미애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님이 같이 정치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맞나, 이재명을 위한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 같아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자꾸 ‘선출 권력이 1등이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말씀을 자꾸 하시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판사가 신인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판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들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국민들, 현명한 국민들, 판사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 보고 공부 좀 하세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들이 마지막 과정에 전부 대법원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립니다. 대법관 숫자 늘리고 4심제 만들고 대법원장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범죄자를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장을 휩박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짜뉴스로 만든 청문회, 중인 하나 불러내지 못하는 이런 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5분씩 써 오셔 가지고…… 좋습니다. 5분씩 써 오셔 가지고 조회대 대법원장 비난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치 9단 박지원 위원님, 이것 맞습니까?

○**박지원 위원** 맞아요!

○**신동욱 위원** 저희를 질책하실 자격이 됩니까, 지금? 나경원 간사 되라 마라 하는 그런 자격 됩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의 부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회대 대법원장 왜 그런 문제 생겼습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판결, 열도당도 않은 판결, 1심까지 2년 2개월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열도당도 않은 판결 내려 가지고 대법원에 올려 보내서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대선후보를 똑

바로 뽑았어야지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 예의를 지키시고요.

○**박지원 위원** 나경원 위원 1심 판결은 6년간 끌었어요.

○**신동욱 위원** 선배님은 빠지시라니까요.

○**박지원 위원** 자기들은 왜 안 빠져요, 왜 저만 빠져요?

○**신동욱 위원** 선배님 제가 존중합니다.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뭘 더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뭘 더 하실 게 있다고 이러세요?

○**박지원 위원** 여보세요!

○**신동욱 위원** 빠지세요. 더 이상 뭘 더 하실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정치인이시잖아요.

○**박지원 위원** 내란 당에서 뭐 하려고 그러나?

○**신동욱 위원**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대한민국 사법부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제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 나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말 좀 하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목적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나 재판은 남아 있지요. 그 재판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판 못 막으면……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들을 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들 법사위에서 다 빠지시든가요. 왜 그렇게 여기 와서 주장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변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더 크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자고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계엄 잘못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장내 소란)

○**김기표 위원**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 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한 짓을 생각하십시오, 대법원이 한 짓을.

○**신동욱 위원** 대법원이 뭔 짓을 했는데요?

○**김기표 위원** 대법원이 무엇을 위한 집단입니까? 그러면 정치 한복판에 들어온 대법원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대법원 존중의 근거가 뭡니까? 대법원이 왜 존중받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동욱 위원** 대법원 가짜뉴스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대법원이 잘못됐어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1분 더 주세요.

○**김기표 위원** 대법원이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신동욱 위원** 여러분들이 끌어들였잖아요. 대법원을 여러분들이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 그것을 구별을 못 합니까?

○**김기표 위원** 그것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래야 대법원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무슨 이재명 지키기…… 대선 불복합니까?

○**신동욱 위원** 여러분들이 대법원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집단 의심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대법원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법원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최혁진 위원** 민주주의 파괴자 국민의힘, 해산해야 합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이 병들면 대법원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해서 물러나듯이 대법원이 잘못하면 대법원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증거는 안 대고 가짜뉴스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을 공격하면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

○**신동욱 위원** 가짜뉴스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장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냐고요.

○**송석준 위원** 계속 의혹만 갖고 얘기하잖아.

○**김기표 위원** 그래서 물어보자는 것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자고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여기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1분 더 주세요, 1분.

○**박균택 위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이미 시작했을 때는 존중을 해 주시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동욱 위원님은 발언을, 지금 토론 신청을 하셔 가지고 토론 내용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료 위원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도발을 부르시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민주당은 안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먼저 그런 거예요!

○**신동욱 위원** 민주당은 지목하지 않습니까? 왜 나경원 위원을 괴롭히는데요?

○**송석준 위원**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민주당이 먼저 그런 거예요. 진작 그런 말씀 하셔야지, 그러면. 진작 그런 말씀 하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신동욱 위원** 무슨 이런 진행을 합니까?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조배숙 위원** 공평하게 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나경원 위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어요. 법사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최혁진 위원**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이성윤 위원** 나경원 위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어요, 이해충돌.

○**신동욱 위원** 자격을 누가 판단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냐고요.

○**위원장 추미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도발을 해 놓고 해당 호명된 위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방해받는다, 여러분들 입장만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을 도발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도발이 뭐예요, 도발이?

○신동욱 위원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도발이라니요?

○서영교 위원 도발이지!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의 신성한 발언을 도발이라니? 그러면 간첩이에요? 무슨 도발을 해.

○서영교 위원 도발이지, 그러면. 그게 도발이지 도발이 아니야? 도발이지.

○송석준 위원 아무 때나 도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 볼까요?

○서영교 위원 말의 시작을 누가 했어? 도발이지. 거짓말만 하고.

○송석준 위원 정상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그것 갖다가 도발이라 하면 그것은 모독이지, 모독.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이 한참 선배 되는 박지원 위원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발언을 도발했는지 한번 볼까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양쪽 위원님들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민주당 위원들이 어떻게 도발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발언 청문회 한번 합시다. 발언 청문회 한번 하시자고요.

○서영교 위원 거짓말쟁이 신동욱 위원이야. 거짓말만 하고.

○김용민 위원 예의를 지킵시다, 예의를. 선을 넘지 말아야지.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양쪽을 다 제지를 해야지. 그러면 민주당은 왜 제지를 안 해요?

○서영교 위원 자기가 거짓말해 놓고 짹 빠지고……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신동욱 위원 국민 모시고 발언 청문회 한번 하자고요, 누가 도발하는지.

○송석준 위원 질서 좀 잘 유지해 주세요.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위원장 추미애 여러분들께서 내란을 극복해 내고 현정질서에 따라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는 등 아니면 마치 유죄 확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관련 재판에 있어서 주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었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검찰권을 남용을 했고 수사를 잘못해서 이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유죄 취지 과기환송된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위원 내란은 확정이 됐습니까? 내란은 확정이 됐냐고요?

○서영교 위원 거봐, 내란을 옹호하는 거지!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내란당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 쿠데타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 스스로도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정질서를 지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됩시다’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 해제에 동참을 하셔야 됐었고 헌정질서를 복구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회 법사위 자리를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꾸 4심제라고 하면서 정말 법사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많이 참고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헌법소원 중의 95%가 재판소원입니다. 그만큼 독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독일 헌법을 준수하고 독일 헌법에 따른 국민 기본권을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확보해 가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책무고……

○**신동욱 위원** 우리가 왜 독일 헌법을 지켜요? 대한민국헌법을 지키지. 왜 독일 헌법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경원 위원** 그게 바로 4심제예요. 대법원은 못 믿고 헌법재판소는 믿겠다……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봐요!

○**위원장 추미애**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독일은 사건의 95%가 이미 재판소원이라는 겁니다. 자료 좀 찾아보시고 얘기 를 하세요.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지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 해병 특검으로 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 어디 말을 함부로 해요! 피의자? 어디 함부로 말을 해!

○**송석준 위원**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세요!

○**김용민 위원**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조사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특검이 정치특검이라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곽규택 위원** 법사위 여당 간사가 특검 수사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특검이 정치 적이라는 거예요!

(장내 소란)

○**김용민 위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지요.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저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곽규택 위원** 무슨 저항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송석준 위원** 증거를 대 보세요, 증거를.

○**김용민 위원**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있고 하니 대선후보 날릴 수 없다, 6월 2일 이후에나 날아갈 것이다’.

○나경원 위원 6월 9일, 할 수 있는 게 6월 9일이라고……

○김용민 위원 날릴 것 다 얘기하고 오셨나 보네요.

○나경원 위원 아니, 소설대로 하더라도 6월 9일이라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자, 봅시다. 당시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였던 서보학 교수께서 아예 경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상고 기간 7일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은 대법원이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이 안 움직일 것 같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기록도 안 읽고 이를 만에 결론 냈지 않습니까? 이게……

○나경원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송석준 위원 기록을 안 읽었다고 단정하는 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기록 안 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주진우 위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6만 쪽을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변호사 했던 것 맞아요? 6만 쪽을 다 읽을 필요가 있나고.

○김기표 위원 기록 안 읽었다고 했어요.

○김용민 위원 이게 상상이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적어도 자기 기록은 읽고 꼼꼼하게 재판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경원 위원 변호사 한 것 맞아요? 사법고시 본 것 맞아요?

○위원장 추미애 여러분들은 옳은 소리 나올 때마다 더 시끄럽게 떠드네요.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너무 오도하지 마세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위원 함부로 조용히 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김용민 위원 그러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니……

○위원장 추미애 벌써 세 번째 경고입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함부로 동료 위원한테 조용히 하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김용민 위원 그랬으니……

좀 들어 보십시오, 제 얘기 좀.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러면 나가시든가.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 같은 얘기는 그만해요.

○김용민 위원 들어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그렇게……

○위원장 추미애 왜 옳은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떠드나요? 좀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도 끼어들지 마세요, 좀! 위원장까지 끼어드네, 이제.

○나경원 위원 말 좀 곱게 쓰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김용민 위원 9일 만에 선고했지요. 그리고 나서 항소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 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아요. 첫 기일 잡고 그다음에 송달부터 합니다. 집행관 송달까지 했지요. 5월 15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만약에 5월 15일 날 피고인이 불출석하든가 어떤 이유로 재판이 안 열린다고 치면 바로 그다음 날 16일 날 재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재판하면 즉일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지요.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왜 파기재판 안 했냐고요? 서보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저희 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의 이런 정치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 이것을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툭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 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정치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검사 출신 위원님들?

○곽규택 위원 박군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양이네.

○주진우 위원 본인 당 위원들한테나 얘기하세요. 본인 당 위원들한테, 이성윤 위원한테 얘기하고……

○김용민 위원 주진우 위원님,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한번 밝혀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박군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박군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3.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6시28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으로 김경호 변호사, 강지호 기자를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지금 갑자기 또, 이 청문회 자체가 소위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의해서 대법원을 겁박하고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능멸하기 위한 이런 청문회에 뭐가 부족해서 참고인을 또 추가 출석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근거 없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구와도, 일부의 누구와도 이런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또 여기에 거론된 네 분들과 만난 그런 것의 대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사실을 계속 회피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이 공격을

계속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그 누구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론된 한덕수·정상명·김충식 이런 분들과 어떤 의혹과 관련된 대화를 가진 적도 없고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도 이분은 같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마 분명히 열린 공감TV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서영교 의원님이나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17일 방송에서 뭐라 그랬느냐, ‘팩트로 얘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다’라고 바로 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현장 증거 사진이 없는 한 설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이 열린공감TV가 얘기하잖아요, 설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열린공감TV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도한 게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 강조했어요. 거기에 또 한 출연자는 뭐라고 그러냐, ‘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아예 이 영화나 드라마는 허구다, 팩트가 아니다 공개하고 가지 않나. 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여기 출연진이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얘기를……

거기다 열린공감TV가 또 얘기하잖아요. 방송 초반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 이런 식으로 벌써 해당 이 유튜브 방송도 사실을 정확히 밝혀 주고 또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절대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 귀한 시간……

명절이 이제 6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뒷골목에 가 보세요. 얼마나 민생이 타들어 가고, 대한민국이 통상협상도 말로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하나도, 국민들이 보기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상 관계도 불확실하고, 지금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겹박하고 있잖아요. 안보 상황도 심각하고 민생도 심각하고 통상도 심각하고. 주식, 여러분들 코스피 5000 올리신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기업들을 속박하고 이제는 기업들을 노조, 그야말로 강성노조에 귀속을 시켜서 기업인들이 자기들 경영 결정도 제대로 못하게 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누구나가 다 노동쟁의하고 쟁의 대상도 넓어지고 또 거기다가 기업들 계약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내가 쟁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정말 심각하게,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가 오르기를 기대하신다? 거기다가 또 무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거 계속 강화하고 심지어 영업 취소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명절 다가오는데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로 청문회……

저 1분 더 주세요.

○서영교 위원 오늘 코스피가 3400을 넘었어요. 송석준 위원, 오늘 코스피 3400이 넘었어요. 윤석열 때 2300이야.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만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뭘 그만해요.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만하시지요. 코스피 5000하고 지금 이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무관합니다.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명절 다가오는데 민생은 타들어 가는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근거 없는 팩트에서 벗어난 사실을 갖고……

○**서영교 위원** 근거 없는 송석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송석준 위원 반성하세요.

○**송석준 위원**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뺏어 가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무슨 정말 코미디 같은 이런 법사위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송석준 위원** 법사위원장님, 제발 이런 소모적 법사위 운영 즉각 중단해 주시고요. 제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좀 들으세요.

○**김기표 위원** 송석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정말 발언 기회도 안 주고, 이거 좀 너무 심하세요.

○**서영교 위원** 발언하면서 기회를 안 준다고 그러면 그거 가짜뉴스지.

○**김기표 위원** 추석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생 얘기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사위 통과된 법안이 한 70개 되나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이 그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수 있지요, 그건 국회법에 규정된 거니까. 그런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놔서 지금 다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생법안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빨리 추석 전……

○**송석준 위원** 그거를 진작에 했어야지요.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법사위에서 통과된 게 언제입니까?

○**송석준 위원** 왜 반대하는 법안을 맨 먼저 올렸습니까?

○**김기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조용히 해 주시면 알아듣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에 대한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출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건다 여야 합의해 놓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2일이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통과 좀 시키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을 이렇게 잡고 있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있으면 도대체 민생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야당 위원들께서도 불만 있으신 것은 얘기하시더라도 민

생을 좀 챙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본연의 자세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논의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추석 전에 진짜, 추석 명절 때 귀향길에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됩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법원 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그해서 봤다고 하니까 로그기록이 맞는지, 답변이 일절 없잖아요, 나와 있지도 않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현장 가 가지고 확인 안 해도 좀 물어보고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나타나지.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라도 확인해야지요.

그리고 새로 대법관 증원하자고 하니까 1조 4000억이 드니 하면서, 저는 일종의 으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돈 드는데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법원에 대해서 정말 그 정도 돈이 들 것인지, 대법원장은 방을 칠십몇 평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그것에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같이하시지요. 가서 현장검증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송석준 위원님 대법원 안 가 보셨잖아요, 대법원장실이나? 한번 가 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송석준 위원 우리가 반대한 법안들 그거 다 거부권 행사 유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재고 한번 해 볼게요.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생법안도 같이 통과시키고 우리 고향 가서 국민들 만나서 좋은 얘기 하시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 토론 기회 주세요.

○곽규택 위원 조배숙 위원님 토론 기회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조배숙 위원님 토론 기회 주세요, 아무 때나 토론 종결하시지 말고.

○조배숙 위원 토론 기회 주세요.

○곽규택 위원 조배숙 위원님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하여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4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의혹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법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잘잘못을 국회가 파악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이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권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어디에도 법관은 처벌받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 또한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을 위해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이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본뜻을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와 탄핵을 외치던 분들은 다름 아닌 지금의 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장처럼 법관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지금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무시한 채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면 국회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과 24일 그리고 30일인 오늘 의결로써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16인과 참고인 7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증인 한 분과 참고인 세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불출석 증인 15인 중 11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15인 중 11인은 불출석사유서 대신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한 분도 많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입니다.

참고인을 소개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선택 교수입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서 모처럼 참고인들께서도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어렵게 나와 주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드리고, 청문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청문회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대장 끝나고 난 후에 참고인께서는 가지고 계신 경험과 소견을 줄여서 잠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신다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대강 알겠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요 지금 뭘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저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한 청문회인데 가장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한 것은 우리 국회 증감법에 따른 불출석사유서가 아니라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늘 불출석한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마치 국회가 자신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국회증감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옹변하는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법원조직법 등등에 따라서 못 온다라고 했는데요. 국회증감법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합니다—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다른 법률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이런 의견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사유서 안 내고 이렇게 의견서 내면 옳거니 하고 그것 들어 줍니까?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감치하겠다고 하고 난리 쳤겠지요. 그런데 국회는 무시합니까? 국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도 법사위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대법원은 법 위에 있고 마치 자기들이 특권계층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볼까요? 같은 판사들인데 똑같은 이유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낸 사람들이 있고 불출석사유서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이영진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이 두 분은 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이 사유가 타당한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이게 맞지요. 같은 판사인데 누구는 의견서 내고 누구는 불출석사유서 내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한덕수,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심각합니다. 한덕수 불출석사유서는 이렇습니

다. 9월 30일 10시부터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의 피고로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 오전에 끝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후에는 이 불출석사유서의 사유가 없습니다. 나왔어야지요. 한덕수 불출석한 것, 이 부분 저희는 강력하게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등 판사들이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기 때문에, 의견서는 불출석사유서가 아닙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기 때문에 전원 다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귀연 판사 휴대폰 교체한 것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5월 14일 날 바로 이 청문회였습니다. 당시에도 조희대 청문회였지요. 조희대 청문회 때 그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지요. 이렇게 5월 16일 날 교체하는데 그러면 5월 14일 날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그날 휴대폰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겁니다. 중국산 휴대폰이니까 아마 온라인 주문했을 겁니다. 주문하면 5월 16일 날 배송됐겠지요. 오후 2시 이후에…… 배송하면 다음 날 배송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5월 14일 날 사건이 터지자마자,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휴대폰 주문부터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증거인멸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이 안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청문회가 결국은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왜 이런 청문회 일정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나온 사람은 덩그러니 증인·참고인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강지호·김경호 참고인은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즉석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출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청문회를 왜 잡으셨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또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희대 탄핵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랬습니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한 판결은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무슨 선거 개입입니까?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것이 선거 개입입니까?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을 억지로 문제 삼아서 사법부를 길들이고 정권의 사법 방탄을 완성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에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전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좀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운영을 하는 데 조금 더 공정하게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파적이십니다. 법사위 진행하는 것 보면 저는 국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리고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 협구인 4인 회동설, 그 의혹 제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 없으면 특검에 나와서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당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억울하면 수사받아라, 당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맞지?’ ‘아니다, 나 억울하다’, ‘그러면 수사 받아라’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법부 길들이기는 뭐냐, 우리 사회가 독재로 가는 고속열차가 지금 출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PPT 좀 잠깐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정권이 기획한 독재 시나리오의 마지막 조각이 끼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해서 국가의 틀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해체입니다. 대륙법계인 국가에서 검찰제도라는 것은 핵심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대륙법 형사법 체계에서는 불문율인데 이것은 정말 국가의 틀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방송 3법 그리고 또 KBS·MBC·EBS를 민노총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을 장악해야……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신을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은 감춥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위인설법을 하더니 이제는 이진숙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인설법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법부를 겨누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짜뉴스의 출발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청문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국정감사를 가서도 현장검증이라는 평계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근택 위원님.

○박근택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대통령후보를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했느냐, 이게 사안의 핵심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본인이 안 나왔으니까 대법원 국정감사 실시하는 날 상세히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적지 않은 쟁점이라고 보는데……

○조배숙 위원 아니, 의혹 제기를 하는 쪽에서 근거를 대야지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겁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 의혹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을 때 그다음 날 하루 동안 고민해서 나온 답이 저 1차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게 뭐니까? 그러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평생 남의 진술의 모순점만 캐고 살아왔던 법관이 저런 글을 쓸 때 저 의미의 문제점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새로운 제보가 나타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남 얘기를 살짝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일선 법관 중에서도 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입장이 또 나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시점을 달리해서는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선고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저 얘기는 다른 시점에 만났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저 퀴즈를 국민에게 냈는데 국민들은 저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시점을 달리해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본인이 그 의문을, 의혹을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책임을 씌웁니까? 본인이 의혹을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왜 부르냐고 따지는 태도가 과연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저 판은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한인섭 교수님이 오늘 참고인이셨는데 지방 강연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를 구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글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요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사법부는 국가작용에서 독립 성체가 아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 사법이 작동하고 국회 통과 예산에 의하여 사법을 운영한다’.

두 번째, 출석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나? ‘국회법 제121조에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1조에서는 국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 질의응답은 국민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전례가 있는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사법 사상 가장 존경받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청에 응하여 여러 번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했고 국회와 국민은 그 답변을 비중 있게 여겼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대법원장은 제왕이 아니고 국민주권주의하에서 국가권력의 일부를 기능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국민 봉사자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엄청나면 대법원장은 설명·해명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시대 세종대왕 운운하지 말고 대한민국 시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본을 따를 일이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이러고도 안 나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행동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오늘 이 청문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정말 열을 받을 정도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나왔지요. “조희대 ‘의혹 부인’ 이례적 입장 발표, 판사들 ‘여당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이게 오죽하면 한겨레, 진보적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참다 참다 여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여당 의원들 중에도 법을 모르는 일반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라면 또 이해가 갈 텐데, 이게 뭐니까? 지금 이 자리의 여당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법조인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 아닌 박지원·서영교 두 분은 또 가장 오래 법사위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정권을 넘나들면서 법사위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그리고 또 헌법이 정하는 삼권분립 이런 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또 이거에 대해서 헌법 조항 구절 구절을 다 많이 들춰 보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전혀 법조인 같지 않고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그런 위원들 같지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법사위 처음 왔고 경제학을 주로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기본적인 법학개론 수준으로 이렇게 지켜보더라도 너무나 상식에 벗어난 주장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사위 법조계 출신 여당 위원님들 또 법사위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또 더구나 지금 법사위원회는 6선이세요. 최다선 의원이시고 또 차기 국회의장이 되실지도 모를 분인데—판사 출신이시고—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를 농락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언행과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못 나오신 사유를 얘기했지요.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한 구절 구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제1항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 다시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고 간명한 이 답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반복해서 엉뚱한 답변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것만큼 정확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법고시도 보셨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신다면 바로 이곳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의 독립,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헌법을 어기고 또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국회법을 어기고 이 자리에 오라는 거, 여러분, 정상입니까? 제발 자중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를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장검증 이게 대상입니까? 가서 전산 로그기록 보고 과기환송 과정의 내부 보고서, 사건관리시스템 로그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재판 관여하겠다는 겁니까? 재판 진행 모든 것을 입법부가 인민재판하겠다는 겁니까? 자제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석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석 밥상에 법사위의 이 추태가, 가을에 이 추태가 이제는 추석 밥상에 우리 국민들의 얘깃거리가 될 거고 바로 여러분들이 사법부를 조롱하고 능멸한 만큼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밥상머리에서 조롱받고 능멸당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시방이라도 자제해 주시고 지금 계획된 것을 다 철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자제하세요.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김건희도 감옥에 갔어요. 윤석열이 온갖 나쁜 짓 할 때 윤석열 실드 치느라고 애쓰셨지요. 김건희, 우리가 여기 청문회에 불러냈어요. 김건희 안 왔어요. 그때도 국민의힘은 실드 치느라고 난리 쳤지요.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쳤지요. 김건희한테 불려 가서 검찰이 수사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드러났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3년. 윤석열은 감옥에서 안 나오겠다고 베티다가 보석 시켜 달라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검사도 잘못된 검사, 윤석열도 감옥 갔고 김건희도 감옥 갔고 권성동도 감옥 갔고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작자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온갖 것에 연루되어 있는 작자들 모두 다 감옥 갑니다,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윤석열과 조희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5월 2일 날 질의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시오. 당신이 대법원장 될 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소’라고 하는 말을, 윤석열과 교감을 가지고 대법원장 되었다고 하는 제보를 내가 받았소. 대답하시오. 답변하시오”라고 했을 때 조희대는 답변 못 했어요.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과정 전부 다 수사로 밝혀야 해요. 그 답변 없었어요.

박군택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조희대는 또 4월 중순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흘러나왔어요. 낫말은 새가 듣고 뱀말은 쥐가 듣습니다. 조희대는 도대체 왜 이재명 사건을 단 이틀 만에 처리했느냐? 조희대는 왜 그렇게 마음 가쁘게 이 험난한 일들을 예고하고 대법원이 중립에 서지 않는다고 온갖 지탄을 받을 걸 알면서도 왜 그 일을 감행했을까? 윤석열은 조희대에게 강요하지 않았을까? 한덕수는 조희대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조희대가 과기환송하기 전날 한덕수가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를 겁니다. 그리고 과기환송한 3시,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를 끌어다가 후보로 옹립시키려고 온갖 짓거리를 하다가 끝내는 실패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다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드를 쳐요? 그것을 가리고 싶어요? 조회대, 떳떳하면 나와야지요.

국회법 121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한 번 더 알립니다.

국회법 121조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누구라고 써 있습니까—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우리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했어요. 이렇게 국회법 제121조가 있는데 왜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실드 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이 구리고 무엇이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은 구리고 두려울 만큼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힘이 지난 대법원장에게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띄워 봐 주세요.

국민의힘이 지난 대법원장에게 한 일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온갖 인간들이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에 가고 국회 안에서 피켓들고 찾아가서 몸싸움하고. 이건 뭐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입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저거 뭐니까? 국민의힘 얼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귀연 판사 휴대폰 교체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띄워 봐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당일 2월 4일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당일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날짜가 바로 그 날짜예요. 다음, 또 룸살롱 접대의혹이 5월 14일 있어요. 이튿날, 5월 16일 휴대폰 교체합니다. 이런데도 이런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윤석열 구속취소를 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조회대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조회대를 우리가 청문회 안 합니까? 이런 조회대를 찾아가서 안 물어봅니까? 이런 조회대를 왜 실드 칡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룸살롱입니다. 룸살롱 사진, 룸살롱에 앉아 있는 지귀연이에요. 오늘 나온 제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대가 넘는 비용, 룸살롱 최소 스무 번 접대했다고. 최소 스무 번 접대했답니다. 최소 스무 번 접대하고 그리고 어떤 룸살롱인지 물었더니 ‘그레이스’, 어떤 룸살롱인지 물어봤더니 ‘샤르망’. 그러면 ‘거기 예약했지요?’라고 했더니 그 제보 변호사가 예약했고 가서 또 사진을 찍어 온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귀연이 얘기합니다. 가서 술 조금 더 먹고 왔다고? 그러면 지귀연하고 이 변호사하고 계좌 다 까 봐야 하고 카드 다 까 봐야 하고 카드에 안 나왔으면 접대받은 거고, 이 모든 사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윤석

열 석방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조희대 아닙니까? 그런데 조희대를 감싸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조희대, 윤석열과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5월 2일 날 의혹 제기한 거 답변하세요. 또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다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끝내는 처리했어요. 이에 대해서 조희대,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증감법을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관은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11조는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독재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어떤 것도 질문받지 않겠다는 저런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법 쿠데타가 맞습니다. 이를 만에 대통령후보를 없애려고 한 판결이거든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받았던 과거의 검찰마저도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1997년 검찰이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후보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유보한 결정입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마저도 20년 훨씬 전에 저렇게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철저히 수사하는 안과 정말로 중대한 15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후로 유보하는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하면 대선 후로 유보하는 안이 국민을 가장 편안하게 해 주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왜 부당합니까? 모든 공직자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밤늦게 자정 넘어셔까지 조사도 받아 봤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가기관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지난 5월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는 물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이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정상적으로 봤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상고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오락가락 해명을 하니까 이제 와서 대법원에 접수가 되자마자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한테 배당될지도 모르니까 그 사건기록 전부 다 복사해서 보면 그것은 적법합니까? 대법관들이 소부에 배당되기도 전에 기록을 모두 보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법관의 사건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사건이 아닌 사건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을 모두 추동해서 사법 쿠데타를 획책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저런 조희대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참고인들, 증인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법을 지킨 거예요. 대법원장이 법을 안 지킨 겁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 좀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왔다 갔다 해야지. 원래 순서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만 하는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박지원 위원 자, 제가 발언합니다. 제가 발언해.

우리는 삼권분립을 존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위와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 입법부의 권한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67조 2항에는 국회에서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선거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오는 후보 2인 이상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표결로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군택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과거 걸어 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질문에 다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홍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 보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의견서는 뭡니까? 이만큼 대법원장이 특권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일생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과 참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의견서 냈으면 다 그대로 인정했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존중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지켜야만이 자기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내란을 동조하면서 같이 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언제 누가 정당해산시켰습니까? 역사와 국민이 그 독재, 국정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나경원 위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란 세력 윤석열·김건희와 손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되면 내년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다음 총선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참한 역사적·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가 안 나오면 이것은 붕어빵 청문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루종일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고 15일도 우리는 현장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오늘 원래 국회에서 참 특이한 청문회를 하려고 하다가 모양이 안 좋으니까 법사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만 한 번씩 하고 청문회를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회의 진행 방식이고 스스로 느끼시기에 필요 없는 청문회, 무리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하면 청문회를 그냥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법원의 1·2·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했습니다.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이유가 당연히 유무죄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2심에서 유죄가 날 수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탁 집어서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상소해 가지고 유무죄 결론이 바뀌는 것까지 일반론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본심은 2심에서 겨우 무죄를 받아 놨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 그것을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공격해라 하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기는 법원하고 다 의사소통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지요. 들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내에서의 판결 과정에 본인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6월 3일 대선 전날, 6월 2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가지고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법원의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대선후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저 말이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한 겁니다. 본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거짓말한 거겠지요. 정작 대법원에서의 판결 과정, 심리 과정에 스스로 개입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때는 그냥 저렇게 웃으면서 넘겼지만 지금 와서 보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4인 회동설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명목을 붙여 가지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전에 벌써 대법원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느 쪽이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하려고 한 쪽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로, 상고로 이유가 바뀌는 그런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이 자백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면 빨리 재판 재개하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녀사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니 하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내가 마녀를 봤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종교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그 마녀로 지목된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니가 마녀가 아닌 이유를,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댈 수가 없지요. 아닌 걸 어떻게 증거를 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사건의 프레임들이 전부 다 마녀사냥식이에요.

대법원장 말씀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회에서 왜 불렀습니까?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국회의장이 부르면 그때마다 나와야 됩니까?

4인 회동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하자고 하셨잖아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청문회 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계실 거예요.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워낙 현란해서 도대체 이게 청문회를 하는 건지 뭔지 국민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청문회 아닙니다. 증인 한 분, 참고인 세 분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저 증인·참고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는 들어야지 청문회지요. 증인에게, 참고인에게 들어야지 청문회지요. 그런데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죽 듣고, 오늘 나오신 분들 입장 듣고 이거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청문회입니까? 본인들 애당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느닷없이 조희대 청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증인 스물한 분 했잖아요. 신청위원 전부 ‘추미애, 김용민 외 9인’입니다. 스물한 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물한 분 중에 오늘 애당초 나오겠다고 통보해 오신 분이 복소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김선택 교수님, 이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 가지고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복소연 증인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4인 회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켜봤거나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여부를 지켜봤거나 그래야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증인이 뭐니까? 위트니스(witness), 영어사전 찾아보시면요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질문을 안 시키니까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분이 뭘 지켜봤는데 오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까? 그것도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증인이.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저희 쪽이 요구한 증인을 채택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분 불러 놨는데 한 분은 증인으로서 저희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민주당이 입증하고 싶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진술도 할 수 없는 분을 증인으로 지금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한다고 했는데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두 분을 또 불렀어요, 참고인 두 분. 강지호 기자님, 김경호 변호사님. 저는 이 두 분이 어떤 경위로 여기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청위원은 추미애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 무슨 비즈니스 자리입니까? 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부르고 그것조차도 형성되지 않으니까 청문회를 과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 여러분, 청문회가 아니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장입니다. 저 네 분은 병풍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역사상 이런 청문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추석 이후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법원 현장감사하겠다, 대법원 현장 진행하겠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들 오는 거 불편하고 힘드니까 국회로 불러서 다 하시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청문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도대체 법사위를 농락하는 것이고 대한민국국회를 농락하시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화면만 얼핏 보신 분들은 청문회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아예 오늘은 여차저차 해서 청문회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청문회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모양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끝까지 비난하고 마녀사냥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대선개입 여부가 있다면 따져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청문회 그때마다, 거기에다 김병로 대법원장 이름을 왜 갖다 붙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병로 대법원장한테? 그분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 프레임 때문에 청문회 나오셨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대법원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가 가짜뉴스 퍼뜨려 가지고 대법원장 나와라, 국무총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거 청문회 아닙니다. 저희 의사진행발언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나경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혁진 위원님 하시고,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정해야 됩니까? 범죄 혐의자야 좋겠지요. 범죄 피해자는 생각 안 합니까? 신체적이고 재산적이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심 판사가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무죄가 나면 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범죄자주권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왜 재판에서 항소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합니까?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국정자원 화재 수습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국정자원 화재 나고도 이를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사법이랑 재판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한 나라의 수사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전부 법학박사 되게 생겼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고 불과 4개월여 만에 논의하고 추진되는 사법 관련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헌정사상 최초인 것도 너무 많고 세계적으로 처음 해 보는 것도 많고, 지금 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논의할 시간도 없지요. 준비할 시간은 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특검 관련 특위 만들어서 매일 특검을 상대로 수사자회 했지요. 법사위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법사위는 초등생 유괴 시도 이런 거 막을 방안 궁리해야지요. 이제는 대법원장을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에 불러 가지고…… 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 본인 입맛대로 재판 안 한다고 룸살롱 접대하면서 떠들썩하게 가짜뉴스 내보냈는데 오늘 법원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외부위원이 7명 중에 6명이라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1차 다 계산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무근이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기는커녕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면 의혹 제기한 거 해명하고 나면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가짜뉴스 퍼뜨릴 때마다 공통점이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못 해요. 면책특권 뒤에만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했던 발언 다 자신 있으면 소통관 가서

해 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법안도 영망입니다. 검찰청 갑자기 폐지해서 지금 특검 검사들조차 원대 복귀하겠다고 오늘 입장 냈습니다. 민생 범죄 관련해서 지금 잔뜩 쌓여 있고 미제 사건 엄청 많아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중수청 만든다면서 중립성 확보 방안이 뭐냐니까 모른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수청의 그 많은 수사관들, 직원들 이번 정부에서 다 뽑아요. 한 정부에서 한 기관을 다 채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법원 관련된 분들이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도 법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들어왔던 시기가, 정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많은 검찰 기능 없애고 그 검찰 기능을 다 떠넘겼는데 그 떠넘긴 기관이 아직 방안도 없는 중수청이고 그 중수청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거기서 뽑아요?

공수처에서 한 번 해 봤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관들, 직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뽑아 가지고 민주당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 단 한 건도 없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못 했어요, 예산만 낭비했지.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포기한다 그리고 금융 당국도 개편하겠다고 하더니 또 포기한다고 그리고,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대충 던져 놓고 좀 여론 안 좋다 싶으면 철회하고 검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법관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해요. 2배 늘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4심제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얘기 다 다릅니다. 아까 법사위원장 말씀 들어 보니까 4심제에 찬성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입장 나온 거 보면 민주당의 당론은 또 아니래요.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도 재판이 늦어지는데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배임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의 행위죄 빼고, 전부 재판 없애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요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청문회 취소하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내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 안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참 열도당도 않은 불출석사유서가 아니라 불출석의견서를 냈습니다. 5월 14일에 했던 거하고 9월 30일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 붙였습니다. 이게 쓸 때 제대로 고민이나 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고민이나 하고 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의견서를 봤을 때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듯이, ‘방귀 핀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출석요구하니까 이런 의견서를 내면서 ‘국회 너네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나무라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가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종 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 정말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요. 마치 윤석열이 했던 짓과 똑같습니다.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서 정치검찰을 통해서 정치수사를 했고 정권까지 잡고 검찰을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희생양으로 팔아먹었지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를 열더니 정치적 독립, 사법권 독립을 떠들면서 스스로 정치 한중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얘기가 나왔길래 세종대왕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정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탄과 원한이 없는 판결을 위해서 법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 정말 명백하고 공평한 마음, 정백허심에 입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일곱 가지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고 5월 1일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세종대왕 시절이라면 이미 삼족을 멸하는, 모반죄로, 모욕죄로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법원 노조에서 성명문을 발표한 바와 같이 과연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그대로 닮아 가고 있고 스스로 결자해지 않으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도 윤석열 검찰과 같은 운명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강력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희대 불출석,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전복하려는 12·3 내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침입했을 때도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조희대 취임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재판으로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 조희대 말 그대로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희대가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저는 조희대가 썼던 이 말을 이렇게 고쳐 보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잘못된 재판 하나가 사법부 전체를 지금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절이 넘는 분들이,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결국 탄핵 마일리지만 계속 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력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저는 오늘 이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해서…… 지금 증인·참고인이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 다 한 번씩 의사진행발언하고 그리고 증인·참고인들은 한 번씩 발언하고 가라, 이게 청문회입니까?

저는 청문회 종결동의를 정말 요청합니다. 이 청문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증거를 가져와서 녹취록이라고 틀고 시작을 했습니다. 4인 회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아니고 4인 회동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또

들었다는 사람이 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의혹도 막 제기합니다. 아니,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지 무죄를 입증합니까? 여기 지금 법조인들 많으신데 입증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의혹만 제기하면 다 청문회 하는 겁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국회법 운운하셨는데요 국회법도 헌법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근현대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는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나치 정권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선거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생긴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고 그 핵심 가치가 삼권분립인 것입니다.

이 삼권분립에서 핵심이 뭐니까? 결국 재판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영구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귀연 판사를 흔드는 것, 내란 유죄 반드시 찍어 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법원 보도자료 보니까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여기 다 써 있네요.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술집 내부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조사해 보니까 그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바로……

○**이성윤 위원** 추가 제보 보시지요. 룸살롱 스무 번이에요, 스무 번.

○**곽규택 위원** 왜 이렇게 다들 흥분해요? 잘 아시는 모양이네, 다들.

○**이성윤 위원** 추가 제보 보세요. 지귀연……

○**나경원 위원** 흥분하지 말고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여기.

○**박은정 위원** 왜 지귀연 편을 드세요? 룸살롱 간 판사 편을 왜 드세요?

○**이성윤 위원** 왜 지귀연 편드세요?

○**나경원 위원** 현장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 법관이 있을 때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입증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공화국입니다.

○**이성윤 위원** 스무 번 넘게 갔다잖아요. 스무 번 넘게 룸살롱 갔다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짜리.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못 끼어들게 하시라고요.

○**나경원 위원** 가짜뉴스로 대법원장 흔드는 것, 가짜뉴스로 사법부 흔드는 것…… 김병로 대법원장 이야기했는데요, 김병로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해서 국회에 와서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한 얘기를 들어 보면 딱딱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박군택 위원님도 ‘대법원장이 왜 국무총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똑바로 얘기 안 하냐’하는데 권력 서열 2·3위는 무슨 행사에서 만나는 경우가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정을 하고서는 그렇게 발언한 것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자꾸 가짜뉴스로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대통령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말

고…… 정말 오늘 대통령께서도 ‘무죄 받으면 항소하지 마라’, 저는 범죄자 대통령이니까 범죄자 편만 드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우리가 곱게 들을 수가 없어요. 배임죄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기업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 이것 대통령 죄 면하려고 배임죄 폐지 주장하는구나’……

○**이성윤 위원**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요구한 겁니다.

○**신동욱 위원** 진작에 좀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여러분, 진짜 범죄자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재판 재개해서 재판 잘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릅시다.

○**위원장 추미애**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고 정치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님, 피고인 신분이시지요? 나경원 위원님도 지금 판결 선고 기다리고 계시는 피고인 아닙니까?

○**박은정 위원** 폭력범죄 아닙니까, 폭력범죄?

○**곽규택 위원** 되게 찔리시는 게 있는 모양이네. 민감하게 대응하시네.

○**박은정 위원** 폭력적 범죄자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오늘 어쨌든 국민의 부름을 거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가지 마시고 들으세요.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발언은 듣고 가는 게 예의입니다.

○**최혁진 위원** 지금 오늘……

○**곽규택 위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들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들어요, 우리가?

○**이성윤 위원** 찔리니까 가시는 것 아니에요?

○**박은정 위원** 세비 안 아까워요? 세비를 왜 받습니까, 일도 안 하고?

○**조배숙 위원** 이런 코미디 같은 청문회 할 필요 없어요.

(일부 위원 퇴장)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멈춰 주시면……

○**위원장 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멈춰 주세요.

○**최혁진 위원**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것 보니까.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국민의 힘은 계속 무슨 소설이다, 우리 민주당이나 박은정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설입니까? 본인들이 소설 같은 일을 실제화했지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대체 한 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굿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소설이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테라스 신이나 모신다는 건진이라는 인간, 명태군 같은 사람들한테, 브로커에 놀아나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정농단을 한 것, 만화책이나 나올 만한 일을 본인들

이 별인 겁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고 계엄을 합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소설입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심한 말로 장터에 가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힘들겠다, 법사위에 가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앓아 있으려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겠냐’. 괜찮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들다는 것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입니다. 서민들은 정말 사법부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의 증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득권과 특권층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할 경우에 국선변호사 쓰면 이깁니까? 대형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 써야 이기는데 돈이 없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서 겨우겨우 1심 이기면 항소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친척의 돈까지 빌려서 항소에 이기면 상고 갑니다. 심지어는 재기수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검찰이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서민을 들들 볶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일반 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또 서민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당의 대표가 되어도, 대통령후보가 되어도 악랄하게 당하는구나, 이것을 그대로 보여 준 겁니다.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으면, 특권층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눈 밖에 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민생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생을 원했더라면 지난 내란 시기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판저 앞에 가서 방어벽을 칠 것이 아니라 그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앞에 가서 무릎 끓고 머리를 쳐박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와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서영교 위원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을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득권과 특권층이 연대해서 내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영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1월 22일이었던가요, 그때 이미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과 박안수 계엄사령관까지 참여를 해서 극우 보수 인사를 700여 명과 왜 조찬기도회를 합니까? 내란을 위한 공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도망가 버렸지만 김용민 간사님 말씀처럼 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용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개입 정황이 있고 재판개입 정황이 있고 사전 공모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이 국회 앞에 서서, 국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내란으로 상처 입은 우리 시민들의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권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고 권력이 있고 특권을 가진 사람도 의혹이 있고 죄가 있으면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 앞에 보여질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첫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일체의 혼들림이 없이 반드시 이내란, 계엄의 주역이 되거나 공모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죄를 하고요. 시민의 아픔을, 국민의 아픔을, 서민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법사위원장님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참 힘듭니다. 증인과 참고인 세 분께서 긴 시간 귀가 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증인·참고인의 진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관계로 지금 정식, 제대로 공식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을 지켜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진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소연 증인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 순서로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진술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김선택 교수님께서 의견진술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지호 기자님께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진행상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각 한 7분씩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더 짧게 하셔도 되고요 또 더 길게 하셔도 되고 그냥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제가 가늠하기 위해서 일 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소연 증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인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입니다.

저도 오늘 어떤 질의를 받게 될까, 제가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좀 많이 생각도 해 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대선개입이, 왜 대선이 이루어졌나부터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선개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잖아요. 갑작스러운 대선이었다는 게 문제지요. 평소의 대선이었으면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겠고 그동안에 판단도 했었겠지만 내란이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지요.

12월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십 년 법원행정처와 잘 협의하에 노조 활동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의 제기로 저희 노조 활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도 노조 활동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저희 노조 활동했던, 정당하게 노조 활동한 간부들한테 임금 환수, 최대 2~3년 치, 6년 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는 것과 징계를 하는 것이 계속 감사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 때문에 11월부터 계속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셨어요, 대법원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그런데 12월 3일에 하필 그날 대법원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도 당연히 사법부에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농성장을 버리고 단식을 접으셨어요, 그날 12월 3일 밤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법권 독립을 제일 크게 외쳐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압력 때문에 그 힘없는 저희 말단 공무원 8명한테 총 몇억 원, 한 명한테는 6억 원, 한 명 몇억 원, 정말 이런 공무원한테 그것을 요구해 가면서 이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끌고 왔고요. 거기서 행정처나 조회대 법원장이 저희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불법 계엄이 된 다음에 결국 그때서야 갑자기 수사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독립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도 형사과에도 있었고 민사과에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법관들한테, 아는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옆에서…… 그래서 저를 중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없나를 혹시 제가 명확하게 말해 줄 수 있나.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으로 일하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상소 기록 송부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당일에 탁탁탁…… 저는 이런 것 민원인한테 문제 제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우리 것도 빨리 해 달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파기환송된 다음에 바로 또 특별송달, 집행판 송달 했잖아요.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판기일 지정하고 이런 게 직원들의 눈에서 봤을 때,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님들이나 조회대 대법원장님 여기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해 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보다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국회 법을 알아서, 뭐 헌법을 얼마나 알고 정부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법보다 상식이 먼저고 이런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를,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여섯 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해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숙고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으로서, 법원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그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솔직히 뭔가 더 빨리 해서 안정된 것을 정말 원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랬으면 정말 오셔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솔직한 대답을.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나가야 되냐? 나 아는 것 없다. 모르겠다. 본 것도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오셔서 현장이라도, 그때 기억이라도,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라고 합니다.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 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내 말 한마디가, 나의 뉘앙스가, 나의 내심의 의사가, 내가 얼마나 국민한테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사법부의 신뢰가 지켜지겠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 같이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것,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자꾸…… 제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법이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있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선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다 나가셨지만 그것을 그렇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은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 주십시오.

○참고인 김경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의 직무집행 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4697,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의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

에 따라 소부를 들 수 있고 법원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 대법관의 전원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세 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네 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 날 이렇게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 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를 동안에 6만~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로그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2019도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에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2조 3항에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조직은 직무범위까지 입니다—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회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2에 따라 불출석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귀연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귀연 부분은. 제 7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옆에 있는 강지호 기자님 발언 끝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정리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택 교수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선택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시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그리고 삼권분립 또 사법권 독립도 중요하다, 중요한 헌법적 이익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법권의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독일 헌법 잡지에 나온 논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헌법 체계 내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다른 헌법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논문을 보면 베를린대학의 부르크하르트라는 교수가 썼는데 –‘사법권의 독립도 더 중요하거나 유사한 헌법적인 가치,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비례에 합치만 되면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헌법적 원칙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62년도 판결이 있고 또 유럽인권법원의 2020년 12월 1일 판결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은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2024년에 나온 독일의 형사법 잡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읽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24년 8월 말에 독일의 에어푸르트라는 한 지방법원인데 거기에서 –이 재판 결과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 한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예단에 의한 판결이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판결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유로 법 왜곡죄에 처벌되어서 2년의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구호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을 다른 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회의 출석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대단히 법률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인 것 이지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의 독립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지요, 재판은 이미 정지돼 있

고 이 청문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나서 이미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재판의 내용에 간섭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나서 내려가 버렸고 또 고등법원은 거기에 기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의 결론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간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법권 독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출석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판결문 자체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5월 1일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반대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원합의체의 합의 요체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뭐 하러 씹니까, 판결문에? 그다음에 이 반대의견을 읽고 나서 다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하고, 두 번째는 또 신속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쟁될 사안이 전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다퉜다는 게 뭘 증명하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냐 아니냐를 놓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분쟁이 붙은 것이지요. 이 판결서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급하게 판결을 했느냐면 지금 만약 우리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다시 쓰라 그러면 이런 판결서 안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처지를 다 드러내 놓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전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여기 청문회 와서 ‘보충의견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잘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임파서블 미션(impossible mission)이에요.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던 판결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 야말로 강변입니다,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제가 지난번 헌법학자대회에 가서 고대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권력에 종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던데 이번 대법원의 이런 판결행위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런 행위

가 다시는 없게끔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계속해서 적시에 처리될 만한 사건이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분에 대한 형사사건이에요. 21대 대통령선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입니다. 빨리 처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다룰 때 전원합의체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4개월부터 45일 이전까지만 공동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12명 전원이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합의기일을 잡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답변서가……

보세요. 상고이유서 4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는 4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4월 22일 날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정입니까? 완전히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낼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았으면 가능한 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강지호 기자님께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강지호 2분뉴스 대표기자 강지호입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귀연 재판부 방청객 보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김용현 내란 주요임무종사 10차 공판기일 때입니다. 증인으로는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나오게 되었고요. 증언으로써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이후에 오영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반명령은 장군부터 부사관의 인사와 관련된 것과 지원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온나라시스템이 아닌 보고서로 작성 후 증인만 사인하고 상관들에게 사인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현 측 변호인은 ‘보고서 사인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증인이 왜 판단하냐?’고 하면서 ‘증인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방청객은 김용현 변호인 측에 맞는 추임새를 넣었고 욕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증인이 나가는 도중에 ‘밖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을 저도 실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검찰은…… 오전에 증인 퇴정 이후에 방청객 일부가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오상배 증인에게 ‘당신이 뭘 아는데 그렇게 증언하느냐’라면서 증인을 위협했습니다. ‘오전에 경위가 수차례 제지하는데도 증인의 답변에 부정적 추임새, 웃음, 들릴 수 있는 정도의 반응을 반복한다, 검사 입장에서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증인이 발언할 때 방청객들의 추임새와 욕을 들었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귀연 재판부 소송지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9월 18일 김용현 내란 주요임무종사 19차 공판기일입니다. 증인으로서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방첩사에서 합참으로 파견 나간 가칭 ‘박수박 중령’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의 일입니다. ‘박수박 중령’이 합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말을 듣고 방첩사 소령 이상의 단톡방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질문하려고 하자 김용현 변호인 측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명 사용은 변호인들이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진술자인 ‘박수박’ 진술만 들으면 되지 왜 박성하 증인에게 듣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하면서 ‘오늘 박성하 증인은 여기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며 재판을 끝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첫 번째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목격한 증인도 당연히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 증인이 당시에 이해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 사실상 증거 신청 절차를 거부하고 증거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용현 측 변호인과 특검 측의 공방이 있었는데 변호인 측은 ‘이 양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박수박을 다음 기일에 하자’, 그러자 특검에서 입증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소송지휘권을 두고 흥정하지 마라.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위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인에 대한 압박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증은 원진술자 ‘박수박’과 재진술자인 박성하 증인의 증언이 다르다라고 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귀연 판사는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라고 답변을 했고 이후 두 번째 휴정을 거치면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는데 중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자 김용현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자연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받아 주었고 바로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준비기일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및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재판관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공개재판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여러 번 간이기각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때와 한성진 부장판사 때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재판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방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매 기일마다 있으며 요즘 통상적으로 3~4명의 증인을 부르면 2~2.5명의 증언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월 8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7차 공판기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윤석열·김용현·조지호 피고인의 재판을 병합하여 12월에 심리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증인은 110명 중 35명이 증인 출석을

하였고 75명의 증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준비기일에서 21차 공판이 221일이 걸렸습니다. 9월 30일부터 마지막 공판이 있는 12월 15일, 앞으로 77일이 남았습니다. 12월 까지 공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윤석열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주요 증인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매 기일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자발적인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교도소에서 는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6차 공판기일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치 요청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계재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8차 공판기일이었습니다. 특검 측에서 ‘내란 특검법 11조 4항 규정에 따라서 중계재판 검토 중이다. 물적·인적인 시스템 구축 얼마나 걸리나?’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는 ‘신청서 내면 그것에 맞춰서 말씀드리든지 할게요. 법 통과된 거지요?’, 여기서 이 법은 더 센 특검법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법은 저희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했는데—공표 전이지요—되면 바로 그냥 신청서 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또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떤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 중계재판과 관련해서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 법이 재판부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계속해서 애매하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나타난 결과는 중계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센 특검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추가 진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경호 감사합니다.

지귀연 법관의 헌법 65조 1항 직무집행 간에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 합리적 의심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귀연 법관은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을 윤석열의 구속 만료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심우정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었고 실제 기소는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지귀연 법관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즉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 1월 26일 날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시간을 들이댔고 시간으로 하면 09시 07분에 구속이 만료되고 18시 52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라면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 심사에는 구속만, 그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겁니다. 즉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구속 시간만 임의적으로 빼서 09시 07분이라

고 했으나 체포적부심사 시간까지 빼면 18시 52분에서 47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시 39분이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을 왜곡했습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그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제요 형사 III’편 460쪽을 보면 수사기관은 재구속에 제한이 있지만 법관·법원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시간이 혹시 구속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 안전보장·공공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파면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6현나1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의 경우에는 2024현나8입니다. 여기는 국군통수권자의 의무까지도 위반해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했으며 심지어 정보사 정 대령이 공동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헌법 12조 5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이 모두 그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에 신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최근에 삼청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봤더니 소멸시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사실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지 않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네 분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도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또 궤변으로 인해서 불출석의견서만 내고 나오지 않음으로써 오늘 청문회는 진행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해당된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자신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판결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전체가 모여 중대한 법리를 다루는 자리로 통상 수개월 이상 충분한 심리와 토론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미 준비된 각본을 집행하듯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처리된 전례는 없습니다. 판결 전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예고했고 판결 직후 곧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의 판결은 특정 정치세력에 기회를 제공하려던 도구였다고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란범을 재판하는 지귀연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의 편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앞으로도 적용할 것 같지 않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윤석열 맞춤형 법리 해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희한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조희대식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기는커녕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현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오히려 권력의 칼날이 되어 국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바꾸었습니까? 왜 이를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리고 국민에게 생중계를 했습니까? 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수괴를 풀어 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법부는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순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는 내란의 공범, 쿠데타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또 희한한 일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내란범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하여 사법부는 거울을 들여다보기는커녕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눈곱만큼도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법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20년 벌어진 라임 사건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이 벌어지자 당시 정치검찰은 쪼개기 불기소로 빠져나가면서 제 식구를 감쌌습니다. 이번에 지귀연을 감싼 사법부 역시 당시 쪼개기 불기소처럼 닳은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나 내란범처럼, 휴대폰과 비화폰을 감추고 박살냈던 내란 공범들처럼 휴대폰을 바꿔치기한 지귀연 판사 또 그것을 눈감아 준 사법부,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정직해야 판결도 정직하지. 자신들이 구린테 그 판결도 구리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당하고 불법한 내란 세력과 단단히 유착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반 이상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는 여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삼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 하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삼륜이 아니라 그냥 삼륜 카르텔입니다. 제 밥그릇 키우고 지키는, 기득권 지키는 삼륜 카르텔입니다. 부패 카르텔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주장하면서 내란 정당성을 해괴한 논리로 당연하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버티고 재판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 허가해 주면 밥 잘 먹고 건강 찾아서 집 가까운 데서 법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를 뻣뻣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동 걸지 못하는, 아까 강지호 기자님 말씀처럼 내란범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소불위 행사를 하겠다는 것, 그것은 아까 증인으로 나오신 복소연 증인 말씀처럼 내란을 극복해 낸 국민들이 내란 때문에 있게 된 느닷없이 선택해야 되는 국민주권의 회복이고 그래서 내란범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국민의 대선 시기였습니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께서 그 기본권의 연원이 되는 선택권, 정부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본권 중의 가장 기본권, 기본권을 있게 하는 그 선택권을 침해하고 방해한 것이 바로 이 조희대의 난이고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을 질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핵심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법원장이라도 범죄 앞에서는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84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조희대	대법원장	10. 13.(월) 대법원 10. 15.(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확인
오경미	대법관		
이홍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복소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명불상	오경미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성명불상	이홍구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성명불상	재판 중계방송 지원 TF팀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성명불상	법원행정처 전산실		PDF로 전산화했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10. 13.(월) 대법원 10. 14.(화) 법무부 10. 24.(금) 법제처 10. 27.(월) 대검찰청	대선개입 의혹 확인
조경식	(자칭)전 KH그룹 부회장	10. 13.(월) 대법원 10. 14.(화) 법무부 10. 21.(화) 대전고등검찰청 등 10. 27.(월) 대검찰청	검찰해체의 위헌성, 국민 피해, 부작용 대북송금 사건 조작 주장 관련 이철규 국회의원 관련 허위 증언
김종철	변호사	10. 13.(월) 대법원	인권 및 고용노동 관련
박용찬	신안군의원	10. 14.(화) 법무부 10. 27.(월) 대검찰청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10. 13.(월) 대법원 10. 14.(화) 법무부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7.(월) 대검찰청	쿠평사건 관련 검찰해체 관련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0. 13.(월) 대법원	검찰해체 관련
최재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10. 27.(월) 대검찰청	
박상오	(주)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	10. 14.(화) 법무부	신혼부부 결혼식 취소 관련
박세현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즉시 항고 포기 등
임우열	검찰 수사관 (대검찰청)		검찰 조사 과정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범죄정보1담당관실)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이재명 당대표 테러 관련, 이우환 그림 등 뇌물 관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10. 14.(화) 법무부	
신봉수	변호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0. 23.(목) 수원지방검찰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전진결	교도관	10. 14.(화) 법무부 10. 23.(목)	검사실 출석조사 시 규정 위반 사례 확인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등	수원구치소 감찰 관련
최영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0. 14.(화) 법무부 10. 24.(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쌍방울 불법수사 의혹 관련
미상	국가정보원 요원 (이화영 친척)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0. 14.(화) 법무부	스마트팜 방북비용 대납 음주 사실 부인 허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남욱	변호사	10. 27.(월) 대검찰청	법정 증언 관련 대장동 개발 이익 편취 의혹 / 로비 자금 및 정치권 연루 관련
박건영	변호사 (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12·3 내란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	10. 14.(화) 법무부 10. 21.(화) 대전고등검찰청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7.(월) 대검찰청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	10. 14.(화) 법무부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7.(월) 대검찰청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 검찰 내란 관여 의혹 전반 검찰해체 관련
김현우	안양구치소장 (전 서울구치소장)		수원구치소장 재직 시절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의혹 대북송금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조작 사건, 수원지검 진술세미나 관련 쌍방울 그룹과 연계된 대북송금·방북 대납 의혹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번복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0. 14.(화) 법무부 10. 23.(목) 수원지방검찰청 등 10. 27.(월) 대검찰청	진술세미나 의혹 관련 대북송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주거밀집지역에 대규모 변환소(500kV급 초고압 변전소) 설치 입지 선정 문제점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가거도 방파제
모금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위		
이철우	해양경찰청 과장		
이한우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이진형	전 현대건설(주) 상근자문 (예. 육군소장)	10. 16.(목) 감사원	관저공사 의혹
안병준	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 (전 감사원 국토환경2과장)		감사원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관저 불법 증축 관련 둘 중 한 명
정광명	전 감사원 지방행정1국장		감사원 내부 계시판 글 관련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도 정기감사 당시 법무법인 화우 법률자문 미제출 문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10. 16.(목) 감사원 10. 24.(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 표적 감사, 감사원 관저 이전 감사 등 감사원 운영 관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10. 17.(금) 군사법원	12·3 내란 관련
염보현	육군 군검사(소령)		
김민정	육군 군검사(중령)	10. 17.(금) 군사법원	채 해병 사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	10. 24.(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현숙	샤르망 가게 사장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 부장판사	10. 20.(월) 서울고등법원 등	
황재원	HDC 신라면세점 판촉팀장	10. 21.(화)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HDC신라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정유미	검사	10. 23.(목)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 폐지 관련
박상웅	쌍방울 개발사업부문 이사		
박상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	10. 23.(목) 수원지방검찰청	진술세미나 의혹 관련
오이택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교정관		수원구치소 감찰 관련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신가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쿠평사건 관련
김영석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박희범	검찰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검찰 조사 과정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10. 24.(금) 법제처	
이완규	전 법제처장	10. 27.(월) 대검찰청	안가모임 관련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10. 24.(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 동조자 인사처리 의혹
박태선	유동규 사설흔 배우자		
정민용	변호사		법정 증언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10. 27.(월) 대검찰청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건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정지용	톱텍 대표		기술유출범죄 관련

참고인(45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장용근	교수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0. 13.(월) 대법원	재판 중지 관련
최성철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구글지도 GPS 관련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검찰개혁 관련 내용
양홍석	변호사		검찰해체의 위험성, 국민 피해, 부작용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0. 13.(월) 대법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10. 14.(화) 법무부	검찰해체, 특별재판부 관련
김예원	장애인법센터 대표 및 변호사		
지성우	교수		
고 이재석 경사 동료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한인섭	교수		
정규재	언론인		
김선택	교수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0. 13.(월)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확인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0. 15.(수) 대법원	
강지호	기자		지귀연 재판 참관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 등 고발
장영수	교수		검찰해체의 위험성, 국민 피해, 부작용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10. 14.(화) 법무부	검찰개혁 필요성
정소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원		인천공항출입국 보안관리원 업무 중 폭행 피해 사건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성룡	경북대학교 교수		검찰개혁 관련 내용
안미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	10. 14.(화) 법무부 10. 27.(월) 대검찰청	검찰해체의 위헌성, 국민 피해, 부작용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광민	경기도의원 및 변호사	10. 14.(화) 법무부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7.(월) 대검찰청	이화영, 조경식 변호 관련 수원지검 진술세미나 관련
김상택	자영업/ 감일지구총연합회 회장		주거밀집지역에 대규모 변환소(500kV급 초고압 변전소) 설치 입지 선정 문제점
김은경	치과기공사/감일지구비상 대책위원회 대표		
하승수	변호사	10. 16.(목) 감사원	검찰 특활비
송해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태원참사 관련 감사 지연 등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		감사원 운영 및 감사 관련
김인회	감사원 감사위원		대통령관저 감사 관련
이준일	교수	10. 17.(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10. 17.(금) 군사법원	순직사건 이첩예정 보고 등 관련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채 해병 관련
이래진	불상 (피살된 서해공무원의 형)	10. 2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내용
강민수	뉴스타파 기자	10. 21.(화) 대전고등법원 등	판사 뇌물수수 정황 관련
김련희	무직	10. 21.(화) 서울고등법원 등	국가보안법 판결 관련
장진영	검사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찰 폐지 관련
오세원	대검찰청 공업연구사	10. 27.(월) 대검찰청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 자필편지 조작 통보 방해 의혹
이웅종	KCMC 문화원 원장		
박보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실장	10. 30.(목) 종합감사	치유견 활동 정책지원 필요성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여당 주도 상법 개정안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부회장		문제점과 재개정 방향

성명	직업	출석일	사유	비고
김경호	변호사			
강지호	기자	9. 30.(화)	대선개입 의혹 확인	추가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출장 위원(1인)

장경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출석 증인

복소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출석 참고인

강지호(기자)
김경호(변호사)
김선택(교수)